전북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도 보

제2977호 2024. 12. 6.(금)

www.jeonbuk.go.kr.

조 례

○ 조례 제5649호-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1
○ 조례 제5650호-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5
○ 조례 제5651호-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2
○ 조례 제5652호-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 18
○ 조례 제5653호-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 조례 제5654호-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45
○ 조례 제5655호-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조례 제5656호-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조례 제5657호-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53
○ 조례 제5658호-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조례 제5659호-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59
○ 조례 제5660호-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조례 제5661호-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 71
○ 조례 제5662호-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76
○ 조례 제5663호-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 조례 제5664호-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85
○ 조례 제5665호-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6
○ 조례 제5666호-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8
○ 조례 제5667호-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 89
○ 조례 제5668호-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 조례 제5669호-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 조례 제5670호-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97
○ 조례 제5671호-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 104
○ 조례 제5672호-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 조례 제5673호-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 108
○ 조례 제5674호-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4
○ 조례 제5675호-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 115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조례 제5676호-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117
○ 조례 제5677호-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 ····· 120
○ 조례 제5678호-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3
○ 조례 제5679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 126
○ 조례 제5680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128
○ 조례 제5681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 132
○ 조례 제5682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5
○ 조례 제5683호-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8
○ 조례 제5684호-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9
○ 조례 제5685호-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4
○ 조례 제5686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5

고 시

○ 고시 제2024-363호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 고시 ····· 146
○ 고시 제2024-365호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 ····· 149
○ 고시 제2024-367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수립 정정 고시 ····· 153
○ 고시 제2024-368호 월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85
○ 고시 제2024-369호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 195
○ 고시 제2024-370호 금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2
○ 고시 제2024-371호 마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3
○ 고시 제2024-372호 줄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4
○ 고시 제2024-373호 남문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5
○ 고시 제2024-374호 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6
○ 고시 제2024-375호 대간선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09
○ 고시 제2024-377호 구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10
○ 고시 제2024-378호 풍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11
○ 고시 제2024-379호 동진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12
○ 고시 제2024-380호 내광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13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2024-112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4
○ 입법예고 제2024-113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1
○ 입법예고 제2024-11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50

공 고

○ 공고 제2024-18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258
○ 공고 제2024-189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대한불교 천안종) ····· 259
○ 공고 제2024-189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 260
○ 공고 제2024-1896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 261
○ 공고 제2024-1904호 세무조사 관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2
○ 공고 제2024-19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 263

지시사항

○ 2024. 12. 2.(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 275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4-157호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78
○ 익산시 공고 제2024-238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배산지구 4호공원(배산 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열람공고 ····· 283
○ 정읍시 고시 제2024-133호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승인 고시 ····· 285
○ 김제시 고시 제2024-166호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290
○ 완주군 고시 제2024-115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292
○ 완주군 공고 제2024-1867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 ····· 294
○ 완주군 공고 제2024-1888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호정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 304
○ 고창군 고시 제2024-163호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06
○ 고창군 공고 제2024-2033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 309
○ 고창군 공고 제2024-2034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 311
○ 고창군 공고 제2024-2038호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3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49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변경 및 고시)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도지사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또는 운영의 효과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새만금 고용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새만금 고용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심의
2. 새만금 고용특구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관련된 자문

3.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의 대표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고용, 산업 및 경제 등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예정)기업의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
2.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기관 연계
3. 취업연계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 지원
4. 외국인 고용연계 지원
5.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인력수급조사 및 고용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기관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사업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운영・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원기관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기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지원기관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0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 중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 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분류 중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업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단체 등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융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15조에 따른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금융기관, 금융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① 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센터 건립,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
3.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신설을 위한 투자 지원
4.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유치활동
5.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6. 금융관련 연구활동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을 위한 입지보조금
2. 사업용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일부
3.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고용보조금
4.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 시행하는 교육훈련 보조금

② 제1항의 보조금에 대한 지원요건과 규모는 별표와 같으며 지원절차·방법·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조성) 도지사는 금융특화 도시의 조성과 금융기관의 집적화를 위하여 금융타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도내·외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유치 및 금융타운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입주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융기관의 도내 이전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금융·조세제도를 분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융 교육 제공)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0조에 따라 도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산업 활성화 행사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 고취 및 금융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포럼,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금융산업 육성 유공자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전북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전북핀테크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육성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2.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3.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4. 국내외 핀테크산업 관련 국제회의·세미나 참가 및 홍보
5.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육성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지사는 육성지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부동산간접 투자 활성화)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72조에 따라 부동산간접 투자와 관련된 금융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심의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금융기관의 부동산 투자 가능 여부
2.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확보력
3. 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금융기관
4. 지역 금융기관 이사회 승인 여부

② 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2.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금융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실·국장과 금융자문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금융 관련학과 대학교수
3. 금융전문 언론인
4.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금융분야 연구원
5. 금융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6. 그 밖에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금융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등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2.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4. 제16조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 금융기관”을 “연구소”로 한다.
2.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을 각각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별표]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제7조 관련)

항 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입 지 보조금	○ 외국 금융기관: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 국내 금융기관: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50억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내국인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관의 지역 본부, 지점(사무소 포함)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30억원
고 용 보조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최근 3개월 간 상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	1인당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10억원
교육훈련 보 조 금	○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 내국인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신규 채용 시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1인당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5억원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5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1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른다.

제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단란주점영업
2. 유흥주점영업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받은 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판매업
4. 식품냉동·냉장업
5.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시행령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7.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군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제6조(식품위생교육)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식품운반업자
5.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식품보존업자
7. 용기·포장류제조업자
8. 식품접객업자
9.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6조의2(행정지원) 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1항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위생종이(냅킨 또는 물종이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장실에는 손세척 용품(손세정제 등) 및 손 건조용품(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 한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제외한다.
3. 화장실 내부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1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리장 내에 별도의 손세척·소독 시설(또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건조용품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조리장 내 사용하는 칼·도마는 육류용, 채소용, 생선용 등 구분하여 비치·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살균·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도지사는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식품진흥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89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6.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5.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시·군의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영업자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조례 제7조	시정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2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4.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의 평가를 말한다.
5.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란 「환경보건법」 제13조의 평가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7.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

하는 자를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제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제출방

법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절차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평가서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보완·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법 제9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전북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⑩ 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검토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함
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3. 재심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⑪ 위원장은 별도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94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특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

하는 사항

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제5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⑦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제14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통보, 자료제출·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와 법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제7조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방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보칙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범위,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①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협의요청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사전공사의 금지 등

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6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② 전북특별법 제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르며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2.5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5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2. 에너지 개발사업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0.5만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2)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풍력발전소 3)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0.5만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2)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풍력발전소 3)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 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것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3. 산지의 개발사업	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제고 미만인 사업	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 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4.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만세제곱미터 이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5만세제곱미터 이상 2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5.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 또는 채굴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2) 광물 채굴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전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되는 사업(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위 표 제2호가목3)·나목3),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frac{\text{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text{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 \cdot \cdot \cdot \cdot \cdot$$

7.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8.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지역에서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의 세부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다시 단지·지구 지정 등을 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2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 - 1호)[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4, 15에 해당되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주민참여형 설비, 지자체참여형 설비

다. 전북특별법 제9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5조제2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1) 동·식물상
2)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 대기질
3) 악취
4) 온실가스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지하)
2) 수리·수문
3) 해양환경
라.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2) 토양
3) 지형·지질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 순환
2) 소음·진동
3) 위락·경관
4) 위생·공중보건
5) 전파장해
6) 일조장해
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1) 인구
2)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업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1) 사업개요
2) 지역개황
3) 자연생태환경
4) 생활환경
5) 사회・경제환경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5조제5항 관련)

대상사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별표1 제1호 가목 ~ 나목, 라목 ~ 아목의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별표1 제1호 다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에너지 개발사업	가. 별표1 제2호 가목 1)과 2)의 전원개발사업, 나목 1)과 2)의 전기설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별표1 제2호 가목 3)과 나목 3)의 지상 송전선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3. 산지의 개발사업	가. 별표1 제3호 가목 1)의 묘지 또는 봉안 시설의 설치사업 나. 별표1 제3호 가목 2)의 산지전용허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가. 별표1 제4호 가목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나. 별표1 제4호 가목 3)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별표1 제4호 나목 1)의 분뇨처리시설 라. 별표1 제4호 나목 2)의 처리시설 마. 별표1 제4호 나목 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별표1 제5호 가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비고

1.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에 따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규정 및 부과기준(제19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제4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제19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4호	500	700	1,000
마.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5호	500	700	1,000
바.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6호	500	700	1,000
사.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2)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4호	100	150	200
아.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자.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제19조제2항제3호	300	400	500

차.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19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1호	100	150	200
타.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2호	100	150	200
파.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3호	100	150	200
하.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5호	100	150	200
거.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6호	100	150	200
너.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3항제7호	100	150	200

주: ‘법’은 제18조에 따라 준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의미함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3호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횟수 제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촉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 해산 후 2년이 경과하면 신규 위촉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 관리 예산지원) 도지사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4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산림복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복지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 또는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1. 임명직 위원: 환경산림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산지관리위원회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3명 이내
   다.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건축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산림복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산림복지심의회를 대표하고, 산림복지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산림복지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산림복지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기관·단체·관계전문가

② 산림복지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위원별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산림복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복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5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와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것”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임박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의3의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을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 설치”를 “시설의 설치”로, “산정”을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장에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6호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시·군으로부터의 전입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7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도지사는 시·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한다.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기업은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

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란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

② 도지사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대행)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행업무의 운

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대행 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
   다. 전북자치도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전북자치도의 지형적 특성
5.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제5조 관련)

1. 도안



2. 표시방법

가. 크기

①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②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 10mm 미만의 사용을 금한다.

③ 표시 적용 시 반드시 공간 규정상의 여백을(Clear Space) 확보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색상

①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는 기본형*을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 PANTONE 362 C, #4FB233, C68 M0 Y100 K0 R79 G178 B51
PANTONE 2292 C, #AACE36, C40 M0 Y90 K0 R170 G206 B54

② 1도*로 인쇄하여야 하는 제한적 상황에서는 흑백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한 인쇄 방식으로 주로 먹색 잉크 사용

** #898989, C0 M0 Y0 K60 R137 G137 B137
#3E3A39, C0 M0 Y0 K90 R62 G58 B57

다. 그 밖에 표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표시 사용 지침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8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7조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사서의 배치기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에 따른 사서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1명 이상의 사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도서관의 시설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작은도서관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작은도서관을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서관법」에 따른다”를 “ 「도서관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59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흥지구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문화산업진흥지구 공고)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법 제28조의2제5항 및 전북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후보지의 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사항
3.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진흥지구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진흥지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콘텐츠 등 관련 학계 전문가
2. 문화예술·콘텐츠 등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3.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문화콘텐츠 제작·생산·유통 등 관련 기업인
4. 그 밖에 문화예술·콘텐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진흥지구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입주하는 문화산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지구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시·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3. 전북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4.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인력양성기관에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전북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신청서를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지정(변경) 신청 대상 지역	지구 명칭	
	위치	면 적 ㎡

목적 및 필요성	
지구 주요특징	
지구 추진체계	
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 ※ 변경 신청시 변경내역 및 사유 첨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의견서 첨부)	→	심의 요청	→	협의	→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군수)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서

(지 구 명 칭)

0000. 00. 00

○ ○ 시·군

목 차(안)

Ⅰ. 진흥지구 개요 (총괄) ····· 00

Ⅱ. 진흥지구 지정 목적 및 기대효과 ····· 00
1. 지구 명칭 ····· 00
2. 지구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 00
3.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 00
4. 정부-도 정책과의 연계성 ····· 00
5. 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00

Ⅲ. 진흥지구 육성계획 ····· 00
1. 기본구상 ····· 00
2. 비전 및 목표 ····· 00
3. 전략 및 핵심사업 ····· 00
4. 추진체계 ····· 00
5. 재정지원계획 ····· 00
6. 세부사업 ····· 00

Ⅳ. 진흥지구 개발계획 ····· 00
1. 지구 대상지 현황 및 입지분석 ····· 00
2.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00
3. 지구 내 주요 자원 확보 계획 ····· 00
4. 기타 지구 조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 00

Ⅴ. 진흥지구 운영역량 및 성과관리 ····· 00
1.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 00
2.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00
3. 특례 발굴 및 규제완화 대응 ····· 00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해제 신청 대상 지역	지구 명칭	
	위치	면 적 ㎡

목적 및 필요성	
지구 주요특징	
지구 추진체계	
지구 해제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 제43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지구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의견서 첨부)	→	심의 요청	→	협의	→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군수)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심 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전북특별자치도(관련 실·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 우수문화프로젝트

추천신청서

[ ] 우수문화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업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 분야	[ ] 영화 [ ] 음악 [ ] 게임 [ ] 출판 [ ] 방송영상물 [ ] 만화 [ ] 캐릭터 [ ] 애니메이션 [ ] 에듀테인먼트 [ ] 모바일 [ ] 공연 [ ] 광고 [ ] CT기술 [ ] 기타 ( )
사업내용 요약	

「전북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우수문화프로젝트, [ ]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의·검토	→	추 천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전북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0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촉진

9.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제10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1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유산”이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이하 “국제교류지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굴·보존·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포함한다) 내에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핵심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활용 가치가 큰 구역을 말한다.
4. “예비국제교류지구”란 국제교류지구 중 현재 수중 문화유산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학술발굴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 향후 핵심국제교류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지구 내에 있는 개별 해양문화유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 지정이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와 예비국제교류지구로 구분하여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복수의 해양문화유산이 확인되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클 것
2. 국가 간의 역사적인 교류 흔적이 확인되어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을 것
3. 국제교류지구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요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일 것
4. 주변에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클 것

② 도지사는 예비국제교류지구에서 수중 문화유산이 발굴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군수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5만분의 1의 도면(지형도 또는 해저도를 포함한다)
2. 지구 내 주요 해양문화유산 분포 현황
3. 해양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에 관한 계획
4. 해양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구 활성화 계획
5. 국제교류지구 내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지구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가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도지사가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지구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구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지구 지정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2.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방안

3. 해양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4. 해양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교류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제교류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또는 활성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 해양문화 교류지구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유산, 관광,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양문화 교류지구의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양문화유산과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위원회 사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지구 내에서의 연구, 교육, 홍보,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매입 및 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2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국악예술의 보존·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통문화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국악교육과 연구, 국악원이 제작하는 국악공연의 기획 및 제작과 연습, 출연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년까지 단원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말한다.
2. “직책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직무상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 단원”이란 단원이 휴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력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적 대외활동”이란 단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외부 공연이나 심사, 외부 강의 또는 각종 예술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는 일체의 대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원이 전통국악예술을 진흥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구 및 정원) ① 국악원에는 교육학예실, 공연기획실, 예술단(이하 “각 실·단”이라 한다)을 두며, 정원의 총수는 140명으로 한다.

② 각 실·단별 단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채용 등) ① 도지사는 각 실·단의 단원을 채용한다.

②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각 실·단의 실장과 예술감독 신규채용은 공모제로 하며, 임기 및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개경쟁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실·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단원을 둘 수 있다.

⑤ 단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신규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해고 절차에 따른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 규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 및 행정 지시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제8조(단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원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할 수 없다.

② 단원의 정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제6조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었을 때. 다만, 제6조제6호는「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단서 규정을 따른다.
4. 단원으로 재직 중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각 실·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으로 임용될 때

제9조(명예퇴직 등) ①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다른 국·공립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③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간제 단원에 대한 차별 금지) ① 원장은 단원과 고용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간제 단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기간 중에는 기간제 단원의 근무시간과 보수 지급 등에 있어 근로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
2. 전형위원회
3. 징계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학예실

제12조(기능) 교육학예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교육
2. 국악의 발전과 전승·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국악 관련자료의 기록·보존·정리 및 국악교재 편찬

4. 그 밖에 국악원과 국악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제13조(교과편성) 교육학예실에는 판소리반・현악기반・관악기반・무용반・풍물반・민요반・시조반 등을 둔다.

제14조(교육학예실장) ① 교육학예실에 교육학예실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는 교육학예실장을 둔다.

② 교육학예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명예교수) 도지사는 정년이 지난 단원 또는 국악진흥에 현저한 공헌을 한 국악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공연기획실

제16조(기능) 공연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술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의상・소품・악기 등 공연물품 관리
3. 예술단 홍보 등 지원 업무 총괄

제17조(공연기획실장) ① 공연기획실에 공연기획실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는 공연기획실장을 둔다.

② 공연기획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예술단

제18조(예술감독 등) ①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에 각각 예술감독을 둔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의 직책임용 추천과 근무평정, 복무관리 등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공연) ① 각 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해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해외 공연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람료 등) ① 각 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단이 외부공연을 할 때에는 요청자로부터 해당 공연의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수 및 복무

제21조(본봉 및 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봉과 수당 등(이하 “보수”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호봉은 연 1호봉씩 승급하며 초임호봉, 경력합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겸직 및 사적 대외활동 금지) ① 단원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원장의 서면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사적 대외활동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단원의 징계) ① 단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시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징계의 효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수강료

제24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국악원에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악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이 취소·정지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원 운영이 1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 전액
3. 수강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수강료

제25조(수강료 감면) ① 도지사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3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를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기능을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을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

도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4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문단)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5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가치생산 일자리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

가.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 및 수요조사를 포함한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

나. 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다.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라.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마.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의2를 제9조의2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일자리 협의체)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

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직업재활사업”을 “직업재활사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6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해”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에 유해가 되는”으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역학조사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양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7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따른 부실 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① 도지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 있는 부실시공 방지교육 시행을 위해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시행하고 이 조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①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와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

1항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한다)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실벌점 부과) 제10조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결정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

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인 경우
4. 그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할 때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8호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를 “장소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
6. 무료 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분의 2 이상의”를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69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도로 없는 땅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제25조제1항 중 “말하고, 감면율 및 감면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법 제49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0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해당 집합건물을 시장·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5조(감독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그 밖에 감독반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위원은 감독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정비용) ①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 등이 부담한다.

1. 분쟁당사자가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조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감독 신청서

사군명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성별		임기	20 . . . ~20.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영 제11조의2)
신청내용	
검토의견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연장 사유서

관리인	성명		성별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제출의견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영 제11조의2)
3. 검토내용	

감독 결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감독반장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1호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3.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

비스

제5조(교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2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업장을 말한다.
2.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사분규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대화”를 “대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조합”을 “노동자·노동조합”으로, “한다”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노사분규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조합”을 “노동자·노동조합”으로,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을 할”을 “도출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재정지원은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을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최초 대상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의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로 한다.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상대상자)”를 “(수상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부포상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포상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3호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산업단지 지정 지역 중 미분양 지역
2.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지역

제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작성) ①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 내 경제, 산업, 일자리·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
2.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고용계획,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다),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다) 등
3. 기업유치를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작성 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검토) ① 도지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지역산업과의 연계가능성
4.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또는 제5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고시) ① 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시행 개발기관
2.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② 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투자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5. 단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투자진흥지구의 지구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4. 지정해제 사유

②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 제125조제4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변경)사항

신 청 (변 경) 구 역	구 역 명		면 적	㎡
	위 치			
투자계획	목 적			
	투자이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상시근로자수)			
	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변경사유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지정(변경)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종합계획심의회	결과 통보
신청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

■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지구개요	명칭					지정일
	위치					변경일
투 자 자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업종		주소			
	전체 부지면적		건물면적			투자이행기간
공 정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투자금액 (원)	계획	총투자금액	투자 개시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실적	총투자금액	투자 개시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명)	계획	총고용인원	고용 개시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전북					
		도외					
	실적	총고용인원	고용 개시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전북						
		도외						

부진사유 (상세히 작성)	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향후 대책 및 계획	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년 월 일

작 성 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시·군)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x297㎜[백상지 80g/㎡]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4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7제4항”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5호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중장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3. “중장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창업 활성화 및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창업기업의 책무) ① 중장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관련된 자는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창업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장년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장년창업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중장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장년 재창업 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중장년재창업 교육
2.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정책 관련 정보 제공
3. 중장년재창업을 위한 조세·법률 등 상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6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3. 창업 공간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각 호의 청년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2. 전북특별자치도민 중 예비청년창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7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

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
3.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
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산업보안 강화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8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농업의 생산·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
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컨설팅 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7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신고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
4. 신고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6조의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인력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10.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등)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교육감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
2.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
3. 직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

제10조(업무협약) 교육감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관련 기업 및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은 직업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담당업무 소관부서 과장, 직업계고등학교의 장,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군 및 시·군 소재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교원, 관계 기관·대학·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과 같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개발할 경우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용추계서”라 함은”을 ““비용추계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이라 함은 국가와”를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비용추계의 방법)”을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중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할 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안 주관부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 중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해당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 △△국 △△ 과장 ○○○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3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4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주시의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전주시의 명칭란 중 “전주시 50원”을 “전주시 49원”으로 한다.

군산시의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신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군산시의 명칭란 중 “군산시 42원”을 “군산시 40원”으로 한다.

정읍시의 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정읍시의 명칭란 중 “정읍시 32원”을 “정읍시 31원”으로 한다.

김제시의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김제시의 명칭란 중 “김제시 32원”을 “김제시 30원”으로 한다.

완주군의 삼봉유치원란 다음에 완주군의 운곡마루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완주군의 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완주군의 명칭란 중 “완주군 29원”을 “완주군 28원”으로 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완주군	운곡마루유치원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1134	신설

임실군의 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임실군의 명칭란 중 “임실군 14원”을 “임실군 13원”으로 한다.

고창군의 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고창군의 명칭란 중 “고창군 19원”을 “고창군 18원”으로 한다.

부안군의 창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부안군의 명칭란 중 “부안군 18원”을 “부안군 16원”으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356원”을 “합계 345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군산시의 금암초등학교란, 마룡초등학교란, 개야도초등학교란, 신시도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군산시의 명칭란 중 “군산시 53교”를 “군산시 49교”로 한다.

김제시의 심창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김제시의 명칭란 중 “김제시 34교”를 “김제시 33교”로 한다.
임실군의 신덕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임실군의 명칭란 중 “임실군 15교”을 “임실군 14교”로 한다.
고창군의 선동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고창군의 명칭란 중 “고창군 21교”를 “고창군 20교”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414교”을 “합계 407교”로 한다.
별표 3의 임실군의 운암중학교란을 삭제하고, 임실군의 명칭란 중 “임실군 9교”를 “임실군 8교”로 하고, 같은 표 명칭란 중 “합계 160교”을 “합계 159교”로 한다.
순창군의 순창여자중학교의 명칭란을 “새솔중학교”로 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순창군	새솔중학교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교명변경

별표 5의 완주군의 전북하이텍고등학교의 명칭란을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한다.

시군명	명 칭	위 치	비고
완주군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1-1	교명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공포 당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신설·이전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전주시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57	<삭제>	<삭제>
	전주시 50원		전주시 49원	
군산시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시 서수면 황등서로 351-8	<삭제>	<삭제>
	신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18-5	<삭제>	<삭제>
	군산시 42원		군산시 40원	
정읍시	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읍시 정우면 대산1길 90	<삭제>	<삭제>
	정읍시 32원		정읍시 31원	
김제시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0	<삭제>	<삭제>
	심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295	<삭제>	<삭제>
	김제시 32원		김제시 30원	
완주군	<신설>	<신설>	운곡마루유치원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1134
	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완주군 봉동읍 완주로 449	<삭제>	<삭제>
	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148-9	<삭제>	<삭제>
	완주군 29원		완주군 28원	
임실군	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56	<삭제>	<삭제>
	임실군 14원		임실군 13원	
고창군	선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삭제>	<삭제>
	고창군 19원		고창군 18원	
부안군	창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안군 계화면 창북중앙길 115	<삭제>	<삭제>
	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안군 상서면 고인돌로 314	<삭제>	<삭제>
	부안군 18원		부안군 16원	
	합계 356원		합계 345원	

【 별표 2 】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군산시	금암초등학교	군산시 서수면 황등서로 351-8	<삭제>	<삭제>
	마룡초등학교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123	<삭제>	<삭제>
	개야도초등학교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189-10	<삭제>	<삭제>
	신시도초등학교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18-5	<삭제>	<삭제>
	군산시 53교		군산시 49교	
김제시	심창초등학교	김제시 진봉면 지평선로 1295	<삭제>	<삭제>
	김제시 34교		김제시 33교	
임실군	신덕초등학교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56	<삭제>	<삭제>
	임실군 15교		임실군 14교	
고창군	선동초등학교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로 1010	<삭제>	<삭제>
	고창군 21교		고창군 20교	
	합계 414교		합계 407교	

【 별표 3 】

중학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임실군	운암중학교	임실군 운암면 상운길 12	<삭제>	<삭제>
	임실군 9교		임실군 8교	
순창군	순창여자중학교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새솔중학교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합계 160교		합계 159교	

【 별표 5 】

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시군명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완주군	전북하이텍고등학교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1-1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1-1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5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을 “학생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을 “학생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실내 체육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비고란 제6호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시설사용료 중 “전라북도 내 학생(1인당)”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1인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68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8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3호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내역

1. 명 칭 : 아양산 치유의 숲
2. 위 치 : 정읍시 시기동 산28번지 외 1필지
3. 조성면적 : 72,412㎡
4. 편입토지 : 정읍시 시기동 산 28번지, 산29-1번지(2필지)
5. 승인날짜 : 2024. 11. 29.
6. 시설물의 종류 : 치유센터, 치유숲길, 숲체험장 등
7. 투자계획 : 60억 원('23년 2억 원, '24년 14억 원, '25년 27억 원, '26년 17억 원)
8.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9. 시설계획

(단위 : ㎡)

세부시설		단위	사업규모	수량	시설 면적	형질 변경 면적	건축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합 계					8,121	8,121	843.47	849.27	
산림 치유 시설	소계				5,852	5,852	843.47	849.27	
	치유센터	동	지하1층, 지상1층	1	1,764	1,764	843.47	849.27	
	치유산책로	m	B=1.5m	46	64	64			
	황토길	m	T=20㎝	437	1,872	1,872			
	오감체험길	m	B=1.5m	65	97	97			
	치유숲길	m	B=1.5m	412	588	588			노선중복

세부시설		단위	사업규모	수량	시설 면적	형질 변경 면적	건축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392m
	치유숲길 (요가장)	m	B=1.5m	41	61	61			
	요가장	개소	12.414*12m	1	133	133			
	숲체험장	개소	연식앉음벽	1	44	44			
	숲체험장	개소	원형데크	1	51	51			
	명상쉼터	개소	선배드	13	289	289			
	명상쉼터	개소	해먹	5	124	124			
	숲속도서관	개소	L=40, 2단	1	79	79			
	숲속교실	개소	A	1	245	245			
	숲속교실	개소	B	1	80	80			
	숲체험장	개소	미러폰트, 4타입	1	251	251			
	숲체험장	개소	로그트랙, 3게임	1	110	110			
편익 시설	소계				2,239	2,239			
	진입로	m	B=6.0m	165	2,185	2,185			
	세족장	개소	4.5*2.1*2.5	1	10	10			
	야외쉼터	개소	2.46*1.72*2.08	2	10	10			
	데크목교	m	B=2.0m	14	34	34			
위생 시설	배수지	개소	40ton	1	30	30			

10. 시설물종합배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365호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

부안군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수도법」제1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Ⅰ. 수도사업인가

1. 사업의 명칭 : 부안군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수도사업자) : 부안군수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안군 부안읍, 행안면 일원의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안배수지 용량 증설로 급수민원을 해소하고, 수도기본계획에 따른 부안배수지 체류시간 안정성 확보로 부안급수분구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나. 사업 개요
  1). 목표연도 : 2025년
  2). 배수지 시설용량 : V=6,000㎥(기존 부안배수지 9,100㎥)
  3). 송・배수관로 : 송수관로(D350mm) 1,368m, 배수관로(D350~400mm) 1,362m
  4). 사업기간 : 2019.~ 2025.
  5). 총사업비 : 8,952백만원(균특이양 6,266, 군비 2,686)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일원

나. 편입면적 : A=4,57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부안군 부안읍, 행안면 역리(제3농공단지) 일원

나. 급수인구 : 23,250명(2035년 급수인구 계획) / 21,389(2025년 급수인구 계획)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기간 : 2019.~ 2025.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6. 0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추가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도서는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담당자 : 엄희승 ☏ 063-580-3872)

Ⅱ.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3번지 일원	-	증)4,575	4,575	-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신설 - 면적: 4,575㎡	- 부안군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신설하여 배수시설 및 송배수관로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3.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Ⅲ. 부안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3번지 외 1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나. 명칭 : 부안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의 면적

시 설 명	군계획시설 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4,575	4,575㎡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편입면적(㎡)	구성비(%)	
합 계	**4,575**	**100.0**	
건축시설부지	76	1.7	
기반시설부지	1,465	32.0	
녹지시설부지	1,112	24.3	
기타시설부지	1,922	42.0	

다. 건축개요

구분	세부 시설명	구조	연면적(㎡)		건축면적 (㎡)	비고
			계	지상1층		
합 계			40.28	40.28	41.97	
건축시설	전기실	철근콘크리트 구조	40.28	40.28	41.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안군수

나.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붙임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구분	성명 또는 명칭	
계						7,741	4,575			
1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9	답	51	51	군유지	부안군	
2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10	답	35	35	군유지	부안군	
3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4	답	152	152	군유지	부안군	
4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7	답	18	18	군유지	부안군	
5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2	답	316	316	군유지	부안군	
6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8	답	126	126	군유지	부안군	
7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3	답	1,516	1516	군유지	부안군	
8	부안군	행안면	역리	15-6	답	599	599	군유지	부안군	
9	부안군	행안면	역리	18-3	답	181	160	군유지	부안군	
10	부안군	행안면	역리	18	답	1,133	610	군유지	부안군	
11	부안군	행안면	역리	16	도	1,736	96	군유지	부안군	
12	부안군	행안면	역리	16-1	도	33	30	군유지	부안군	
13	부안군	행안면	역리	14	답	1,750	840	군유지	부안군	
14	부안군	행안면	역리	14-1	답	6	6	국유지	기획재정부	
15	부안군	행안면	역리	14-2	답	89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7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수립 정정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2차)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88호(2024.06.21.) 및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8호(2024.08.02.)로 고시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 면 적 : 151,776㎡

3. 도시개발구역의의 지정목적

○ 고창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기업입주에 대비하여 직·주 근접 실현 및 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공간 마련
○ 고창군 도시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연계성에 근거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개발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구역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1,776	-	151,776	100.0	
주거용지	소 계		81,553	증) 145	81,698	53.8	
	단독주택		6,180	증) 476	6,656	4.4	
	공동주택		69,085	증) 287	69,372	45.7	
	준주거(근생)		6,288	감) 618	5,670	3.7	
업무시설용지			8,161	-	8,161	5.4	
커뮤니티시설			345	감) 10	335	0.2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61,717	감) 135	61,582	40.6	
	도 로		24,539	감) 27	24,512	16.2	
	주 차 장		1,836	감) 169	1,667	1.1	
	공공청사		6,538	증) 45	6,583	4.3	
	공원·녹지		28,786	증) 16	28,802	19.0	
		공 원	21,709	증) 87	21,796	14.4	
		녹 지	7,077	감) 71	7,006	4.6	
	가스공급시설		18	-	18	0.0	
	저류시설		(3,000)	-	(3,000)	-	공원 내 중복결정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용적률 (%)	전용면적 (㎡)	평균주택규모 (㎡)	호 수 (호)	인구 (인)	비 고
기정	합 계	75,265		-	-	1,215	2,553	
	단독주택	6,180	180 이하	-	-	19	40	
	공동주택	69,085	-	-	-	1,196	2,513	
	임대	13,818	200 이하	60 이하	90	307	645	
	분양1	25,016	200 이하	60~85	115	363	763	
	분양2	30,251	200 이하	60~85	115	526	1,105	
변경	합 계	76,028		-	-	1,215	2,553	
	단독주택	6,656	180 이하	-	-	20	42	
	공동주택	69,372		-	-	1,195	2,511	
	임 대	13,818	200 이하	60 이하	90	307	645	
	분양1	25,016	200 이하	60~80(50% 이상) 85초과(50% 미만)	115 127	357	751	
	분양2	30,538	200 이하	60~85	115	531	1,115	

○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 로(변경)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7	3,285 (1,661)	39,732 (24,539)	1	422	9,660	5	635 (436)	8,185 (6,075)	11	2,228 (803)	21,887 (8,804)
	변경	18	3,302 (2,081)	40,574 (24,512)	2	574	11,264	4	584	7,679 (5,569)	12	2,144 (923)	21,631 (7,679)
중로	기정	8	2,709 (1,284)	35,701 (22,618)	1	422	9,660	3	375	5,631	4	1,912 (487)	20,410 (7,327)
	변경	7	2,595 (1,374)	34,744 (20,792)	1	484	10,198	2	324	4,759	4	1,787 (566)	19,787 (5,835)
소로	기정	9	576 (377)	4,031 (1,921)	-	-	-	2	260 (61)	2,554 (444)	7	316	1,477
	변경	11	707	5,830 (3,720)	1	90	1,066	2	260	2,920 (810)	8	357	1,844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소로2류 연장 및 면적 오기정정

나) 주차장(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	2개소	-	1,836	감) 169	1,667	
변경	1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188-1일원	937	감) 169	768	
기정	2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212일원	899	-	899	

2) 공간시설

가) 녹 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	4개소	-	-	7,077	감) 71	7,006	
변경	1	녹 지	완충녹지	고창읍 덕산리 118 일원	408	감) 79	329	
변경	2	녹 지	완충녹지	고창읍 덕산리 119 일원	1,498	감) 42	1,456	
변경	1	녹 지	경관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원	1,029	증) 50	1,079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고창읍 덕산리 210 일원	4,142	-	4,142	

나) 공 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	3개소	-	-	21,709	증) 87	21,796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고창읍 덕산리 176 일원	11,874	-	11,874	
변경	1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8,306	증) 87	8,393	
기정	2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208-3 일원	1,529	-	1,529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고창읍 덕산리 171-6 일원	18	-	1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	공공 청사	-	고창읍 덕산리 189-5 일원	6,538	증) 45	6,583	

5) 방재시설

가) 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3,000	-	3,000	소공원1 중복결정

6) 기타 기반시설

가) 상수도

구 분	상수공급용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일최대급수량	1,048	-	1,048	

나) 하수도

구 분	오수처리용량(㎥/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일최대오수량	960	-	960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정정)

○ 붙임1. 토지의 세목, 붙임2. 물건의 세목(정정)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4496)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66)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063-280-7531)

○ 공람내용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2차) 수립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1,776	-	151,776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고창 덕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1,776	-	151,776	

붙임1.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합계	변 경			151,776	151,776						
1	덕산리	16	답	1,792	1,792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2	덕산리	17-1	전	374	374	염○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86 온천마을제일아파트 ○○				
3	덕산리	17-26	전	841	841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	덕산리	17-27	답	112	112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5	덕산리	17-28	전	18	18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6	덕산리	34-5	답	23	2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				
7	덕산리	34-6	답	2,658	2,658	박○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8	덕산리	34-7	답	53	5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				
9	덕산리	34-8	답	118	118	고창군					
10	덕산리	34-9	답	24	24	고창군					
11	덕산리	100-11	답	29	2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2	덕산리	100-12	답	26	26	고창군					
13	덕산리	100-13	답	2	2	국(국토 해양부)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4	덕산리	100-14	도	22	22	고창군					
15	덕산리	101-3	잡	1,219	1,21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6	덕산리	101-5	답	106	106	고창군					
17	덕산리	101-6	답	16	16	고창군					
18	덕산리	102	답	1,628	1,628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				
19	덕산리	102-1	답	67	67	고창군					
20	덕산리	103-9	전	1	1	국(국토 해양부)					
21	덕산리	111-4	도	19	19	국(건설부)					
22	덕산리	113-3	대	33	33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23	덕산리	115	잡	675	675	박○숙 (합유자) 송○표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4	덕산리	115-4	도	69	69	고창군					
25	덕산리	115-42	잡	17	17	국(건설 교통부)					
26	덕산리	115-32	잡	31	31	국(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7	덕산리	116	창	661	661	박○숙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한국 ○○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송○표 (합유자)		지상권	한국 ○○ 주식 회사		
28	덕산리	116-1	대	378	378	박○숙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한국 ○○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송○표 (합유자)		지상권	한국 ○○ 주식 회사		
29	덕산리	116-2	도	23	23	국(건설부)					
30	덕산리	116-6	도	28	28	국(건설부)					
31	덕산리	116-7	도	19	19	국(건설 교통부)					
32	덕산리	116-5	대	68	68	국(국토 교통부)					
33	덕산리	117-2	도	3	3	고창군					
34	덕산리	118	전	1,166	1,166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35	덕산리	118-3	전	3	3	국(국토 교통부)					
36	덕산리	119-2	도	182	182	고창군					
37	덕산리	119-3	답	3,354	3,354	정○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44번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38	덕산리	119-4	답	10	10	고창군					
39	덕산리	119-5	답	23	23	고창군					
40	덕산리	119-6	도	209	209	고창군					
41	덕산리	120	잡	3,850	3,850	유한회사 디○ (1/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근저당	흥덕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흥덕초등길 ○○	
						유한회사 가○(1/2)		지상권	흥덕 ○○ 조합		
42	덕산리	120-2	답	44	44	고창군					
43	덕산리	120-3	도	116	116	고창군					
44	덕산리	121-2	답	120	120	고창군					
45	덕산리	122	답	2,090	2,090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6	덕산리	122-1	답	12	12	고창군					
47	덕산리	123	답	2,549	2,549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8	덕산리	124	답	1,089	1,08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49	덕산리	124-1	답	151	151	고창군					
50	덕산리	125-2	답	452	452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51	덕산리	125-1	답	3	3	고창군					
52	덕산리	126-3	답	183	183	성○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04, ○○				
53	덕산리	126-2	답	33	33	고창군					
54	덕산리	128-1	답	308	308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55	덕산리	129-4	답	1,071	1,071	김○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56	덕산리	129-5	답	1,033	1,033	변○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7	덕산리	129-2	답	272	272	고창군					
58	덕산리	129-3	답	83	83	고창군					
59	덕산리	134-4	도	6	6	김○이	정읍시 수성동 948-9 두산빌라 ○○	근저당	정읍 ○○ 금고	정읍시 수성동 ○○	
60	덕산리	135-1	답	4,878	4,878	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61	덕산리	135-2	도	132	132	김○수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62	덕산리	135-3	도	33	33	고창군					
63	덕산리	135-4	도	104	104	고창군					
64	덕산리	136-6	도	12	12	고창군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65	덕산리	136-8	도	2	2	고창군					
66	덕산리	136-9	도	105	105	고창군					
67	덕산리	136-10	대	2	2	김○순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				
68	덕산리	138-3	답	34	34	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69	덕산리	138-1	도	6	6	고창군					
70	덕산리	140-3	도	18	18	고창군					
71	덕산리	166	답	3,988	3,988	김○선 (1,944/3,9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동3길 14, ○○				
						김○경 (1,944/3,98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				
72	덕산리	166-1	전	334	334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23				
73	덕산리	166-2	전	50	50	김○삼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김○만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김○성 (10/50)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				
						김○열 (10/50)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				
						김○수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74	덕산리	166-19	답	26	26	고창군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75	덕산리	166-20	답	26	26	고창군					
76	덕산리	167	답	60	60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77	덕산리	167-1	답	135	135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78	덕산리	168	답	73	73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79	덕산리	169	전	50	50	류○선					
80	덕산리	170	전	165	165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1	덕산리	171	답	1,306	1,306	유○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가압류	한국 ○○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82	덕산리	171-1	도	169	169	박○기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3	덕산리	171-2	전	60	60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4	덕산리	171-3	전	3,402	3,402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5	덕산리	171-6	임	1,463	1,463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86	덕산리	171-7	임	1,888	1,888	강○옥 (377.6/1,88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377.6/1,888)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377.6/1,88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377.6/1,888)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377.6/1,8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87	덕산리	172	답	1,342	1,342	오○녀 (671/1,34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지상권	고창 부안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정○선 (671/1,34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부안 ○○ 조합		
88	덕산리	172-1	목	1,995	1,995	박○영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9	덕산리	172-2	전	621	621	윤○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90	덕산리	172-3	대	231	231	오○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91	덕산리	172-4	답	1,520	1,520	안○례 (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0 ○○				
						엄○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92	덕산리	172-5	답	162	162	김○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80 ○○				
93	덕산리	172-6	전	2,716	2,716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94	덕산리	172-7	답	17	17	고창군					
95	덕산리	173	답	78	78	안○례 (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0 ○○				
						엄○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96	덕산리	173-1	답	24	24	고창군					
97	덕산리	174	전	160	160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98	덕산리	174-1	전	207	207	고창군					
99	덕산리	175	답	3,666	3,666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7 ○○				
100	덕산리	176	답	3,901	3,901	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01	덕산리	177-1	답	937	937	윤○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02	덕산리	177-2	답	466	466	윤○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03	덕산리	177-3	답	203	203	고창군					
104	덕산리	178	전	642	642	윤○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05	덕산리	178-1	전	198	198	고창군					
106	덕산리	179	답	3,977	3,977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107	덕산리	180	답	3,603	3,603	유○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08	덕산리	180-2	답	3,686	3,686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109	덕산리	181-1	답	2,249	2,249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110	덕산리	181-2	도	40	40	고창군					
111	덕산리	181-3	도	13	13	고창군					
112	덕산리	181-4	도	43	43	고창군					
113	덕산리	181-5	도	25	25	고창군					
114	덕산리	182-1	잡	1,583	1,583	김○호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형제동길 ○○	근저당	양○경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	
115	덕산리	182-2	도	139	139	김○수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				
116	덕산리	182-3	도	96	96	고창군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17	덕산리	182-4	도	248	248	고창군					
118	덕산리	183-2	도	60	60	고창군					
119	덕산리	184	답	238	23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				
120	덕산리	184-1	대	588	58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				
121	덕산리	184-2	답	224	224	고창군					
122	덕산리	184-3	답	49	49	고창군					
123	덕산리	184-4	도	34	34	고창군					
124	덕산리	185	전	598	598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125	덕산리	185-1	전	41	41	고창군					
126	덕산리	185-2	전	41	41	고창군					
127	덕산리	185-3	전	497	497	고창군					
128	덕산리	186	답	4,479	4,479	이○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낙산로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29	덕산리	187	전	217	217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30	덕산리	187-1	전	24	24	고창군					
131	덕산리	188-1	전	775	775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32	덕산리	188-2	도	10	10	고창군					
133	덕산리	188-3	전	237	237	고창군					
134	덕산리	188-4	전	9	9	고창군					
135	덕산리	189-3	도	126	126	고창군					
136	덕산리	189-5	대	4,713	4,713	박○열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	근저당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	
137	덕산리	189-6	대	8,201	8,201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138	덕산리	189-10	대	637	637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39	덕산리	189-11	답	2,245	2,245	김○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 동신아파트 ○○				
140	덕산리	189-50	도	20	20	국(건설부)					
141	덕산리	189-24	전	253	25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42	덕산리	189-51	도	20	20	고창군					
143	덕산리	189-52	도	19	19	국(국토 교통부)					
144	덕산리	189-53	도	5	5	국(건설부)					
145	덕산리	189-39	도	1	1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6	덕산리	189-40	도	163	16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7	덕산리	189-42	도	153	15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8	덕산리	189-43	임	92	92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9	덕산리	189-44	도	120	120	김○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이○석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	
								압류	고창군		
150	덕산리	189-54	전	6	6	고창군					
151	덕산리	189-55	대	60	60	고창군					
152	덕산리	189-56	답	31	31	고창군					
153	덕산리	189-49	답	258	258	고창군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54	덕산리	207-2	답	503	503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155	덕산리	207-3	대	500	500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156	덕산리	207-10	도	56	56	고창군					
157	덕산리	207-11	도	52	52	고창군					
158	덕산리	207-12	도	87	87	고창군					
159	덕산리	207-7	도	92	92	송○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창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식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0	덕산리	207-8	도	72	72	송○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창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식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1	덕산리	207-9	전	608	608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62	덕산리	208-1	전	3,643	3,643	김○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63	덕산리	208-3	전	1,552	1,552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4	덕산리	208-4	대	91	91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지상권	주식회사 ○○은행		
165	덕산리	208-13	도	258	258	고창군					
166	덕산리	208-6	도	108	108	고창군					
167	덕산리	208-7	도	471	471	송○자 (1/2)	서울시 중구 황학동 ○○				
						송○환 (1/2)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8	덕산리	208-8	도	72	72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169	덕산리	208-9	도	96	96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170	덕산리	208-10	대	649	649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고창군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71	덕산리	208-11	전	1,237	1,237	박○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72	덕산리	208-12	전	742	742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지상권	고창군 ○○ 조합		
173	덕산리	209	답	2,392	2,392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74	덕산리	209-7	대	5,507	5,507	고창군					
175	덕산리	209-2	도	48	48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76	덕산리	209-3	전	1,101	1,101	염○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아중롯데아파트 ○○				
177	덕산리	209-8	학	241	241	염○영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아중롯데아파트 ○○				
178	덕산리	209-6	묘	542	542	고창군					
179	덕산리	210	대	658	658	안○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180	덕산리	210-1	도	207	207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				
181	덕산리	210-2	도	393	393	국(기획재정부)					
182	덕산리	210-3	전	2,645	2,645	유○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남구2길 ○○	근저당	○○ 은행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83	덕산리	210-4	전	1,531	1,531	유○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6,569				
184	덕산리	210-5	임	182	182	엄○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185	덕산리	210-6	임	337	337	국(기획재정부)					
186	덕산리	210-7	전	1,855	1,855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80 ○○				
187	덕산리	210-8	임	79	79	변○광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88	덕산리	210-11	전	18	18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				
189	덕산리	210-14	전	102	102	고창군					
190	덕산리	210-15	대	40	40	고창군					
191	덕산리	210-16	답	1,927	1,927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92	덕산리	211-1	대	1,725	1,72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 부안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지상권	고창 부안 ○○ 조합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93	덕산리	212	대	1,085	1,085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지상권	주식회사 ○○은행		
194	덕산리	212-1	도	4	4	고창군					
195	덕산리	212-2	전	196	196	고창군					
196	덕산리	212-3	대	460	460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197	덕산리	213	답	86	86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0-9 ○○				
198	덕산리	214	대	314	314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99	덕산리	215-5	답	109	109	박○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00	덕산리	215-6	도	102	102	고창군					
201	덕산리	218-2	답	36	36	박○인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				
202	덕산리	500-21	구	116	116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03	덕산리	501-11	구	3,032	3,032	국(농림부)					
204	덕산리	505-1	도	264	264	국(건설부)					
205	덕산리	507	도	43	43	국(건설부)					
206	덕산리	508	도	93	93	국(건설부)					
207	덕산리	509-1	도	101	101	국(건설부)					
208	덕산리	509-5	도	5	5	국(건설부)					
209	덕산리	510	도	228	228	국(건설부)					
210	덕산리	511-3	구	1,876	1,876	국(농림부)					
211	덕산리	511-4	구	21	21	국(농림부)					
212	덕산리	512-1	도	3	3	국(건설부)					
213	덕산리	산37-4	학	125	125	국(기획 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14	덕산리	산39-19	도	9	9	고창군					
215	덕산리	산39-20	도	660	660	고창군					
216	덕산리	산40-1	임	893	893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0-9 ○○				
217	덕산리	산40-4	임	209	209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218	덕산리	산47-8	임	714	714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219	덕산리	산47-9	유	49	49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220	덕산리	산48-3	임	406	406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붙임2. 물건의 세목(정정)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	덕산리	101-3	콘테이너	7..7*3.4	26.18㎡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2	덕산리	101-3	차양	7.7*1.5	11.55㎡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3	덕산리	101-3	가추(주방)	2.0*5.5	11㎡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4	덕산리	101-3	가추 (화장실)	2.0*2.0	4㎡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5	덕산리	101-3	가추 (보일러실)	1.0*1.0	1㎡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6	덕산리	113-3	사무실	철골	40.87㎡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7	덕산리	113-3	사무실	시멘트 벽돌	9.9㎡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8	덕산리	113-3	가추	4.5*1.5	6.75㎡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9	덕산리	115	소매점	철근콘크리트	111.33㎡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0	덕산리	115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99.33㎡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1	덕산리	115	통로	판넬 2.3*13.0	29.9㎡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2	덕산리	115	가추 (옥상)	샌드위치판넬	133.64㎡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3	덕산리	115	콘테이너	11.5*4.0	46㎡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4	덕산리	115	출입문	벽돌조 1.4*2.4	3.36㎡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5	덕산리	115	중간문	2.2*2.3	5.06㎡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6	덕산리	115	지붕	샌드위치패널 13.5*5.0	67.5㎡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7	덕산리	115	가추 (외벽)	샌드위치판넬 6.5*2.3	14.95㎡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8	덕산리	115	철제대문	철재 3.5*2.0	7㎡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19	덕산리	116	창고	일반철골	117.6㎡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0	덕산리	116	철제울타리	2.0*17.0	34㎡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1	덕산리	116	철조망	2.0*13.0	26㎡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2	덕산리	116-1	바닥포장	시멘트	1,180㎡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3	덕산리	116-1	콘크리트 기초	3.3*24.0	79.2㎡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4	덕산리	116-1	기둥 (철제빔)		20개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5	덕산리	116-1	상판(철제)	3.3*48.0	158.4㎡	송○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6	덕산리	118	소나무		5주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27	덕산리	171-7	비닐하우스	5.0*3.3	16.5㎡	강○옥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1/5)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28	덕산리	171-7	컨테이너	8.0*4.0	32㎡	강○옥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1/5)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29	덕산리	171-7	가추 (보일러실)	2.2*1.7	3.74㎡	강○옥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1/5)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30	덕산리	171-7	창고	3.3*2.0	6.6㎡	강○옥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1/5)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31	덕산리	171-7	차양	파이프 조 강판 2.0*9.0	18㎡	강○옥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1/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1/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1/5)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32	덕산리	180	시멘트 포장	2.0*2.0	4㎡	유○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33	덕산리	180-2	비닐하우스	5.0*20.0	100㎡	김○환	고창읍 중앙로 208-7 동백아파트○○				
34	덕산리	185	바닥포장	시멘트	37㎡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35	덕산리	208-1	비닐하우스	5.5*4.3	23.65㎡	김○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36	덕산리	208-3	소나무		400주	김○환	고창읍 중앙로 208-7 동백아파트○○				
37	덕산리	208-10	차양	3.0*1.0	3㎡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38	덕산리	208-10	차양	2.5*1.0	2.5㎡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39	덕산리	208-10	차양	5.7*0.3	1.71㎡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0	덕산리	208-10	가추	5.5*2.2	12.1㎡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1	덕산리	208-10	가추	9.7*1.8	17.46㎡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42	덕산리	208-10	창고	조적	21.45㎡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3	덕산리	208-10	차양	샌드위치패널 4.5*3.4	15.3㎡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4	덕산리	208-10	단독주택	조적(적벽돌)	97.29㎡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5	덕산리	208-10	계단		1식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6	덕산리	208-10	대문	철제	1식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7	덕산리	208-10	장독대	시멘트 2.8*3.8	10.64㎡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8	덕산리	208-10	석축	화강석	1식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49	덕산리	208-10	계단	화강석	1식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0	덕산리	208-10	바닥포장	잔디	80㎡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1	덕산리	208-10	바닥	시멘트	285㎡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2	덕산리	208-10	담장	조적 24.0*2.0	48㎡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3	덕산리	208-10	담장	시멘트 94.0*2.0	188㎡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4	덕산리	208-10	저온창고	3.2*4.5	14.4㎡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5	덕산리	208-10	비닐하우스	6.0*12.0	72㎡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6	덕산리	211-1	제작공장	일반철골	437.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부안 ○○○ 협동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57	덕산리	211-1	가추		69.03㎡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58	덕산리	211-1	가추		155.7㎡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59	덕산리	211-1	상품보관실		151㎡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0	덕산리	211-1	차양	15.7*0.3	4.71㎡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1	덕산리	211-1	차양	5.9*1.9	11.21㎡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2	덕산리	211-1	차양 (작업대)	6.3*2.5	15.7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3	덕산리	211-1	가추 (자재보관소)	20.5*2.4	49.2㎡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4	덕산리	211-1	차양 (자재보관소)	1.5*12.5	18.7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5	덕산리	211-1	가추 (알루미늄 제작소)	38.3*4.6	176.18㎡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6	덕산리	211-1	차양 (알루미늄 제작소)	38.3*1.1	42.13㎡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7	덕산리	211-1	샷시보관함	12.0*7.2	86.4㎡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8	덕산리	211-1	철제대문		1식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69	덕산리	211-1	바닥	콘크리트	1,200㎡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70	덕산리	212-3	사무실 (제조업소)	일반철골	279.23㎡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관련 지번208-4, 212
71	덕산리	212-3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	38.88㎡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관련 지번208-4, 212
72	덕산리	212-3	차양 (탕비실 앞)	4.0*1.5	6㎡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73	덕산리	212-3	차양 (창고 앞)	10.4*1.4	14.56㎡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74	덕산리	212-3	발전기실	3.2*1.3	4.16㎡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75	덕산리	212-3	차양 (발전기실 앞)	3.5*1.8	6.3㎡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76	덕산리	212-3	사무실 (2층)	일반철골	158.26㎡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회사○○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관련 지번208-4, 212
77	덕산리	213	비닐하우스	13.0*7.0	91㎡	이○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78	덕산리	214	단독주택	철근콘트리트	51.72㎡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79	덕산리	214	가추		4.2㎡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0	덕산리	214	가추	10.2*3.3	38.08㎡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1	덕산리	214	차양	2.0*8.0	16㎡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2	덕산리	214	가추	1.6*6.3	10.08㎡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3	덕산리	214	화단	2.5*15.7	39.25㎡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4	덕산리	214	담장	3.8*0.6	2.28㎡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5	덕산리	214	담장	17.0*1.4	23.8㎡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6	덕산리	214	바닥포장	벽돌(45㎡), 시멘트(47㎡), 잔디(55㎡)	1식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7	덕산리	500-21	문기둥	0.5*0.4	2㎡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88	덕산리	511-3	비닐하우스	4.0*10.0	40㎡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89	덕산리	511-3	흄관		13m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8호

월하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월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월하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술산리, 대야면 접산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44.1ha
5. 사 업 개 요

○ 수원공 : 배수문 4개소

- 술산 배수문 확장 : (1.5×2.0×2련 → 3.0×2.0×2련)
- 월하1 배수문 확장 : (1.5×1.0×1련 → 3.0×2.0×1련)
- 월하2 배수문 확장 : (2.0×1.5×2련 → 3.0×2.0×2련)
- 접산 배수문 확장 : (2.0×2.0×2련 → 3.0×2.0×3련)

○ 평야부 : 배수로 확장 정비 5조 4.430m

1) 배수지선 : 4조, 4,020m
   - 술 산 배수지선 : [옹벽블록] B×H×L=7.0m×2.0m×1,710m
   - 월하1 배수지선 : [개 거] B×H×L=3.5m×1.5m×860m
   - 월하2 배수지선 : [개 거] B×H×L=6.0m×1.5m×980m
   - 접 산 배수지선 : [옹벽블록] B×H×L=8.0m×2.5m×470m

2) 배수지거 : 1조, 410m
   - 월하 배수지거 : [개 거] B×H×L=3.0m×1.2m×410m

○ 복토 : 7.8ha 23,441㎥

6. 사업 기간 : 2024년 ~ 2028년(5개년)

7. 총 사업비 : 14,73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전화063-440-571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임피면 월하리	825	천	65296	38	국	농수산부				
2	임피면 월하리	826	도	4555	126	국	농수산부				
3	임피면 월하리	120-2	답	1619	412	국	건설교통부				
4	임피면 월하리	828-1	구	87	87	국	농수산부				
5	임피면 영창리	1173-1	구	123	123	국	농수산부				
6	임피면 영창리	725-4	답	892	56	국	건설교통부				
7	임피면 월하리	850-2	답	4047.1	27	황경례	군산시 삼화2길 18-1(삼화동)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91,700,000	
8	임피면 월하리	876	구	1086.4	114	국	농림부				
9	임피면 월하리	875	도	1970.4	1970.4	국	농림부				
10	임피면 월하리	874	구	2721.6	2721.6	국	농림부				
11	임피면 월하리	859	구	1624.9	15	국	농림부				
12	임피면 월하리	860	도	2520.6	32	국	농림부				
13	임피면 월하리	879-1	구	1246.5	6	국	농림부				
14	임피면 월하리	880	도	2339.7	12	국	농림부				
15	임피면 월하리	852-13	도	223.1	1	국	군산시				
16	임피면 월하리	862	구	3408.6	57	국	농림부				
17	임피면 월하리	863	도	4529.6	74	국	농림부				
18	임피면 월하리	843-15	도	767.1	13	국	군산시				
19	임피면 월하리	883	구	1754.1	45	국	농림부				
20	임피면 월하리	882	도	2565.2	2565.2	국	농림부				
21	임피면 월하리	881	구	2933.2	2933.2	국	농림부				
22	임피면 월하리	864	구	1844.5	7	국	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임피면 월하리	865	도	2565.4	18	국	농림부				
24	임피면 월하리	866	구	2965.6	15	국	농림부				
25	임피면 월하리	887	도	3256.2	22	국	농림부				
26	임피면 월하리	868	도	3218.6	18	국	농림부				
27	임피면 월하리	869	구	1679	8	국	농림부				
28	임피면 월하리	870	구	2063.6	19	국	농림부				
29	임피면 월하리	871	도	2811	42	국	농림부				
30	임피면 월하리	872	구	2057.9	13	국	농림부				
31	임피면 월하리	889	도	5686.6	2489	국	농림부				
32	임피면 월하리	888	구	2471.4	2471.4	국	농림부				
33	임피면 월하리	873	구	3598.7	33	국	농림부				
34	임피면 술산리	676	구	1544.7	9	국	농림부				
35	임피면 술산리	677	도	2018.8	17	국	농림부				
36	임피면 술산리	694	도	2149.5	2149.5	국	농림부				
37	임피면 술산리	693	구	2495.9	2495.9	국	농림부				
38	임피면 술산리	681	구	814.2	8	국	농림부				
39	임피면 술산리	682	도	1718.6	17	국	농림부				
40	임피면 술산리	684	구	1894	30	국	농림부				
41	임피면 술산리	685	구	1049.5	20	국	농림부				
42	임피면 술산리	686	도	2144	46	국	농림부				
43	임피면 술산리	703	도	2372.8	2372.8	국	농림부				
44	임피면 술산리	702	구	2963.4	2963.4	국	농림부				
45	임피면 술산리	710	도	5694.9	1060	국	농림부				
46	임피면 술산리	709	구	1486.5	1057	국	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임피면 술산리	689	구	624.6	8	국	농림부				
48	임피면 술산리	690	도	1673	21	국	농림부				
49	임피면 월하리	825	천	65296	50	국	농수산부				
50	임피면 월하리	826	도	4555	98	국	농수산부				
51	임피면 월하리	123-14	전	658	14	국	건설교통부				
52	임피면 월하리	122-15	전	1464	476	국	건설교통부				
53	임피면 월하리	830-1	구	367	37	국	농수산부				
54	임피면 월하리	122-20	답	439	169	국	건설교통부				
55	임피면 월하리	123-22	답	50	6	국	건설교통부				
56	임피면 월하리	852-11	답	7404.9	24	최은심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284				
57	임피면 월하리	851-10	답	1069.8	34	고백곤 외 2인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325	고석균 고용길	옥구군 임피면 월하리 673 옥구군 임피면 술산리 480	지분 1/3 지분 1/3	
58	임피면 월하리	880	도	2339.7	62	국	농림부				
59	임피면 월하리	879-2	구	1069.6	1069.6	국	농림부				
60	임피면 월하리	879-1	구	1246.5	336	국	농림부				
61	임피면 월하리	879	구	538	504	국	농림부				
62	임피면 월하리	862	구	4555	3353	국	농림수산부				
63	임피면 월하리	862-1	구	661.1	661.1	국	농림부				
64	임피면 술산리	14-15	답	2370	115	국	건설교통부				
65	임피면 술산리	14-23	구	132	78	박한종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08				
66	임피면 술산리	643	구	314	202	국	농수산부				
67	임피면 술산리	13-19	구	69	38	국	농수산부				
68	임피면 술산리	13-22	답	2693	101	국	건설교통부				
69	임피면 술산리	13-23	구	2	2	국	농수산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0	임피면 술산리	14-22	구	5	5	국	농수산부				
71	임피면 술산리	14-25	답	85	7	국	건설교통부				
72	임피면 술산리	671-18	답	378.4	4	국	건설교통부				
73	임피면 술산리	671-17	답	3197.3	108	장태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127-18				
74	임피면 술산리	671-16	답	3757.2	78	이형식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1042				
75	임피면 술산리	671-15	답	1338.9	28	이이식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1042				
76	임피면 술산리	671-14	답	3020.2	62	이이식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1042				
77	임피면 술산리	671-13	답	4193.6	85	장연선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2동 209호				
78	임피면 술산리	671-10	답	1905.1	38	이보례	군산시 하나운로 48, 206동 1105호(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79	임피면 술산리	671-12	답	4197.8	85	문해진	익산시 서동로1길 13(주현동)	최영균 익산농협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24, 103동 1106호 익산시 인화동2가 95-1	지분 1/2 근저당 36,000,000	
80	임피면 술산리	671-11	답	3824.1	77	최완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63, 109동 203호(신성동, 하나아파트)				
81	임피면 술산리	671-9	답	1905.3	38	이보례	군산시 하나운로 48, 206동 1105호(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82	임피면 술산리	671-8	답	3821.3	76	문선호	군산시 대야면 대야시장로 6-2	동군산농협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 84,000,000	
83	임피면 술산리	670-13	답	2274	43	이춘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32		미 등 기		
84	임피면 술산리	670-12	답	4549.3	38	이춘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32				
85	임피면 술산리	670-11	답	3286.9	55	남평문씨참의공파서황종친회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595-1	문성수	군산시 동흥남동 401-18	대표자	
86	임피면 술산리	670-10	답	3264.9	5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7	임피면 술산리	670-9	답	3197.5	56	최귀자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265-32				
88	임피면 술산리	670-8	답	3132.6	56	고복남	전북 완산구 흥산로 390, 120동 502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9	임피면 술산리	670-7	답	3205	57	곽용석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32	김배일	대구 수성구 용학로 316, 201동 201호	근저당 28,000,000	
90	임피면 술산리	670-6	답	3196.4	57	곽용석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32	심은미 동군산농협 익산군산 축협 익산군산 축협 익산군산 축협 익산군산 축협	군산시 대명길 3, 101동 2103호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익산시 남중동 536-6 익산시 남중동 536-6 익산시 남중동 536-6 익산시 남중동 536-6	지분 1/100 근저당 36,000,000 근저당 12,000,000 지상권설정 문용석 근저당 293,800,000 문용석 근저당 151,200,000 심은미 근저당 24,000,000	
91	임피면 술산리	670-5	답	3160.7	58	이영희	군산시 경포천로 34, 110동 1105호(미장동, 군산미장휴먼시아)				
92	임피면 술산리	699	도	1969.2	1969.2	국	농림부				
93	임피면 술산리	698	구	2590.6	2590.6	국	농림부				
94	임피면 술산리	671-7	답	3834.9	76	문숙자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56-5				
95	임피면 술산리	671-6	답	3820.7	74	강옥술	군산시 임피면 술산길 48	문은영 문은경 문귀근	경기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806호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12길 2-3 군산시 미장13길 33, 106동 803호	지분 1/4 지분 1/4 지분 1/4	
96	임피면 술산리	671-5	답	3823.1	74	준자영농 조합법인	군산시 임피면 중전길 33-7				
97	임피면 술산리	671-4	답	1918.8	37	고성자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667-3 백우아파트 307호	문옥순 문이근	익산시 선화로47길 82, 101동 909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72, 925동 102호	지분 1/3 지분 1/3	
98	임피면 술산리	671-3	답	1910.9	37	박선호	군산시 임피면 대령길 6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71,420,000	
99	임피면 술산리	671-2	답	3762.3	72	박선호	군산시 임피면 대령길 6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133,780,000	
100	임피면 술산리	671-1	답	3736.4	69	문정님	군산시 임피면 중갈길 7				
101	임피면 술산리	670-4	답	3231.5	60	김순애	군산시 월하리 340-2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20,221,60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2	임피면 술산리	670-3	답	6270.1	118	문용석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38-48	동군산농협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 60,000,000	
103	임피면 술산리	670-2	답	6232.8	120	문용석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38-48	동군산농협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 240,000,000 지상권설정	
104	임피면 술산리	670-1	답	3044.5	60	심은미 외 1인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38-48	문용석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38-48	지분 99/100	
105	임피면 술산리	695	구	1239.9	72	국	농림부				
106	임피면 술산리	663-12	답	7953.8	196	문형곤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479-3				
107	임피면 술산리	663-11	답	3870.3	94	고복자	익산시 창인동1가1				
108	임피면 술산리	663-10	답	3815.6	92	고낙준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78	최창례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1-53	권리자	
109	임피면 술산리	663-9	답	3819.9	91	유경자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8-3				
110	임피면 술산리	663-8	답	3950.8	93	유경자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8-3				
111	임피면 술산리	663-7	답	3742.7	87	재단법인 원불교	익산시 북일면 신용리344-2				
112	임피면 술산리	663-6	답	3792.3	87	최광표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24, 103동 1106호(작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최영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24, 103동 1106호	지분 1/2	
113	임피면 술산리	663-5	답	3758.6	85	서규원	군산시 미장남로 10, 104동 1602호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69,440,000	
114	임피면 술산리	663-13	구	394	11	한국 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15	임피면 술산리	663-4	답	1521.2	32	서규원	군산시 미장남로 10, 104동 1602호	한국 농어촌공사		근저당 69,440,000	
116	임피면 술산리	663-3	답	3193.9	71	고동일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419	동군산농협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 150,720,000	
117	임피면 술산리	662-10	답	3193.3	70	문규삼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557-4				
118	임피면 술산리	662-9	답	6269.6	136	김병준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491				
119	임피면 술산리	662-8	답	6209.9	133	고동철	군산시 임피면 중갈길 43				
120	임피면 술산리	662-7	답	3148.9	67	문성길	군산시 임피면 서황길 55-4				
121	임피면 술산리	662-6	답	3106.2	66	문일근 외 2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08동 1803호	문옥순 문이근	전북 익산시 선화로47길 82, 101동 909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 925동 102호	지분 1/3 지분 1/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2	임피면 술산리	662-5	답	3123.8	65	박영춘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479-3				
123	임피면 술산리	662-4	답	2898.9	60	문명근 외 3인	군산시 상나운로 105 (나운동)	문은영 문은경 문귀근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27, 238동 806호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12길 2-3(창동)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33, 106동 803호	지분 1/4 지분 1/4 지분 1/4	
124	임피면 술산리	662-11	구	229.6	5	한국 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25	임피면 술산리	662-3	답	6183.2	128	최민수	군산시 임피면 상전길 78				
126	임피면 술산리	663-2	답	3793.8	83	김현식	익산시 선화로73길 38, 901동 701호(부송동오투그란데)				
127	임피면 술산리	663-1	답	2218	101	김현식	익산시 선화로73길 38, 901동 701호(부송동오투그란데)				
128	임피면 술산리	680	구	685.9	30	국	농림부				
129	임피면 술산리	647-13	도	187	12	국	건설교통부				
130	임피면 술산리	662-1	답	3825.3	33	고한영	익산시 남중동2가323-35	고석균 고용길	임피면 월하리 673 임피면 술산리 480	지분 1/3 지분 1/3	
131	임피면 술산리	662-2	답	3189.2	64	장연선	익산시 무왕로16길 26, 102동 209호(영등동, 우미아파트)				
132	임피면 술산리	679	도	1789.9	1789.9	국	농림부				
133	임피면 술산리	678	구	2878.6	2477	국	농림부				
134	임피면 월하리	914	도	10478	32	국	군산시				
135	대야면 접산리	965	천	246488	740	국	농수산부				
136	대야면 접산리	1004-10	답	2463.4	64	최영순	군산시 대야면 탑동길 29-27				
137	대야면 접산리	1097	구	814.9	30	국	농림부				
138	대야면 접산리	1096	도	1739.1	1739.1	국	농림부				
139	대야면 접산리	1095	구	4582.2	4582.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0	대야면 접산리	1094	도	1890.3	1890.3	국	농림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1	대야면 접산리	1086	구	286	11	국	농림부				
142	임피면 술산리	688	구	3318.1	3318.1	국	농림부				
143	임피면 영창리	1219	구	8525	6862	국	농림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9호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된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지역, 지구명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2.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 분	위 치		편입현황		비 고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1634-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2393-1	94	30,774	

※ 지형도면: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열람하여야 함)

3. 지형도면 열람장소
   ○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063-454-3502)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063-440-5714)
4. 첨부서류
   ○ 하리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 구역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6. 세부 사항은 우리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촌사회활력과(☎063-280-2594)

지형도면 토지의 필지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야면 지경리	1634-47	도로	39.0	39.3	국(건설교통부)					
2	대야면 지경리	1634-49	도로	2,223.0	562.4	국(건설교통부)					
3	대야면 지경리	1636-30	구거	106.0	90.7	국(농수산부)					
4	대야면 지경리	1636-31	구거	82.0	78.1	국(농수산부)					
5	대야면 지경리	1636-32	구거	73.0	73.4	국(농수산부)					
6	대야면 지경리	1639-3	도로	2,019.0	660.8	국(농수산부)					
7	대야면 지경리	1639-16	구거	307.0	33.4	국(농림수산부)					
8	대야면 지경리	1639-48	구거	141.0	97.3	국(농수산부)					
9	대야면 지경리	1639-53	구거	42.0	42.0	국(농수산부)					
10	대야면 지경리	1640-45	도로	1,722.0	1,407.2	국(농수산부)					
11	대야면 지경리	1647-2	구거	31,405.0	1,024.8	국(농수산부)					
12	대야면 지경리	1647-35	도로	102.0	26.3	국(농수산부)					
13	대야면 지경리	1647-37	도로	1,693.0	1,380.4	국(농수산부)					
14	대야면 지경리	2292-0	도로	1,237.5	1.3	국(농수산부)					
15	대야면 지경리	2396-0	도로	3,356.0	15.2	국(농림수산식품부)					
16	대야면 지경리	2402-0	구거	810.3	60.5	국(농림수산식품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대야면 지경리	2404-0	도로	1,955.9	9.7	국(농림수산식품부)					
18	대야면 지경리	2405-0	구거	1,054.6	2.7	국(농림수산식품부)					
19	대야면 지경리	2408-0	구거	142.2	137.6	국(농림수산식품부)					
20	대야면 지경리	2409-0	구거	3,584.2	10.1	국(농림수산식품부)					
21	대야면 지경리	2410-0	도로	2,377.2	2.1	국(농림수산식품부)					
22	대야면 지경리	2429-0	구거	3,869.4	17.9	국(농림수산식품부)					
23	대야면 지경리	2433-0	구거	944.4	66.2	국(농림수산식품부)					
24	대야면 지경리	2434-0	도로	1,659.3	8.5	국(농림수산식품부)					
25	대야면 지경리	2437-0	도로	756.2	4.5	국(농림수산식품부)					
26	대야면 지경리	2742-0	구거	7,861.5	80.8	국(농림축산식품부)					
27	대야면 지경리	2743-0	도로	3,582.3	69.9	국(농림축산식품부)					
28	회현면 증석리	22-1	구거	3,570.0	195.1	국(농수산부)					
29	회현면 증석리	22-2	구거	556.0	420.8	국(농수산부)					
30	회현면 증석리	57-23	도로	10,852.0	421.0	국(농수산부)					
31	대야면 지경리	951-9	제방	1,401.0	99.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대야면 지경리	1631-11	제방	2,156.0	2,13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3	대야면 지경리	1631-12	구거	1,540.0	1,26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대야면 지경리	1632-13	제방	742.0	622.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대야면 지경리	1632-14	구거	457.0	49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6	대야면 지경리	1633-15	제방	509.0	506.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	대야면 지경리	1633-16	구거	524.0	51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8	대야면 지경리	1634-27	제방	837.0	829.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9	대야면 지경리	1634-28	구거	1,389.0	1,298.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0	대야면 지경리	1634-33	제방	1,304.0	1,299.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1	대야면 지경리	1634-34	구거	1,824.0	1,81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2	대야면 지경리	1634-43	제방	315.0	31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	대야면 지경리	1634-44	구거	383.0	387.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4	대야면 지경리	1639-19	제방	579.0	35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5	대야면 지경리	1639-20	구거	439.0	43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대야면 지경리	1639-21	제방	131.0	108.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7	대야면 지경리	1639-22	구거	43.0	3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8	대야면 지경리	1639-23	제방	1,214.0	1,01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	대야면 지경리	1639-24	구거	101.0	9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0	대야면 지경리	1639-25	구거	692.0	506.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대야면 지경리	1639-32	제방	568.0	57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2	대야면 지경리	1639-33	구거	227.0	189.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3	대야면 지경리	1640-24	제방	2,036.0	1,31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4	대야면 지경리	1640-25	구거	771.0	687.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5	대야면 지경리	1640-33	구거	89.0	8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6	대야면 지경리	1647-17	구거	547.0	55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7	대야면 지경리	1647-21	제방	55.0	5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8	대야면 지경리	1647-22	제방	1,687.0	1,665.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9	대야면 지경리	1647-23	구거	86.0	104.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0	대야면 지경리	1647-29	구거	78.0	8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	대야면 지경리	1982-51	구거	17,927.0	154.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2	대야면 지경리	2113-5	답	3,323.3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3	대야면 지경리	2113-6	답	3,694.4	155.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4	대야면 지경리	2296-0	구거	1,147.8	61.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65	대야면 지경리	2393-2	답	225.2	6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6	대야면 지경리	2406-0	구거	502.2	291.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7	대야면 지경리	2435-0	구거	938.1	418.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8	대야면 지경리	2438-0	구거	918.6	50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9	회현면 증석리	22-8	구거	1,446.0	40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0	회현면 증석리	658-0	구거	1,423.3	5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1	대야면 지경리	2113-7	답	3,521.5	199.5	김점례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금반길 15				
72	대야면 지경리	2113-8	답	3,504.8	105.8	김영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복들길 24-13				
73	대야면 지경리	2358-1	답	3,397.4	227.3	문은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율2길 2				
74	대야면 지경리	2358-2	답	2,524.7	134.5	문종민	회현면원우리447				
75	대야면 지경리	2361-1	답	2,613.8	161.8	김은경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풍촌길 89				
76	대야면 지경리	2361-2	답	2,583.1	162.8	강하구	회현면원우리463				
77	대야면 지경리	2361-3	답	2,586.3	184.9	강하구	회현면원우리463				
78	대야면 지경리	2362-1	답	3,775.4	245.7	김봉연	회현면원우리79				
79	대야면 지경리	2362-2	답	5,059.0	74.0	전근수	회현면원우리329				
80	대야면 지경리	2363-0	답	2,096.6	126.9	최원익	대야면지경리1310				
81	대야면 지경리	2364-1	답	1,459.1	33.5	최정옥	대야면산월리858				
82	대야면 지경리	2364-2	답	1,619.5	2.0	최순종	군산시 수송동 69-2 현대아파트 104동1202호				
83	대야면 지경리	2364-3	답	4,862.0	10.5	강갑순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1길 98-11(경암동)				
84	대야면 지경리	2364-4	답	3,288.9	50.2	이현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봉황길 95-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5	대야면 지경리	2364-5	답	3,839.3	94.5	김상기	대야면지경리1574-2				
86	대야면 지경리	2364-6	답	4,035.1	94.7	박미순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33 101동 1208호(나운동 현대아파트)				
87	대야면 지경리	2364-7	답	2,720.0	42.8	함진경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0 407동 1101호(산본동 한라아파트)				
88	대야면 지경리	2364-8	답	2,331.7	13.1	김영우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금반길 35				
89	대야면 지경리	2366-1	답	3,710.8	4.1	김상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10 604동 502호 (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90	대야면 지경리	2392-1	답	2,151.5	6.6	고형선	대야면지경리1229				
91	대야면 지경리	2392-2	답	3,268.7	37.9	원창수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21-10 가동 102호 (명성파크맨션)				
92	대야면 지경리	2392-7	답	3,368.5	4.7	양연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57번길 10 1동 1102호(화서동 영광아파트)				
93	대야면 지경리	2392-8	답	4,597.6	71.7	양연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20-4 영광아파트 1동1102호				
94	대야면 지경리	2393-1	답	3,287.8	92.1	김영선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복들길 24-13				
	합 계	**94필지**		**218,596**	**30,774**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0호

금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주생면, 금지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금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금사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금지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97ha
5. 사업개요 : 용·배수로 19조 6,088m 정비
   - 용수로 : 16조 5,435m
   - 배수로 : 2조 549m
   - 용배수로 : 1조 104m
6. 사업기간 : 2024. 12. ~ 2027. 12. (3개년)
7. 총사업비 : 3,473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전화 063-620-205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1호

마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부안군 상서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마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 고 시 사 항

1. 사 업 명 : 미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부안군 상서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4. 수혜면적 : 144.0ha
5. 사업개요 : 평야부 21조 7,838m
   - 용수로 : 용수지선 및 지거 8조 L=3,082m
   - 배수로 : 배수지선 및 용수지거 13조 L=4,036m
6. 사업기간 : 2024. 12 ~ 2027. 12.(4개년)
7. 총사업비 : 3,15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063-580-104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2호

줄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부안군 줄포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줄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 고 시 사 항

1. 사 업 명 : 줄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부안군 줄포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4. 수혜면적 : 193.0ha
5. 사업개요 : 평야부 3조 3,406m
   - 용수로 : 용수지거 2조 L=2,412m
   - 배수로 : 용수지거 1조 L=994m
6. 사업기간 : 2024. 12 ~ 2027. 12.(4개년)
7. 총사업비 : 3,95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063-580-104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3호

남문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운봉읍, 아영면, 주천면, 수지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남문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남문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아영면, 주천면, 수지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477ha
5. 사업개요 : 비상수문 4개소
   - 공안제 : B × H × 련 = 1.0m × 0.8m × 1련
   - 일대제 : B × H × 련 = 2.0m × 2.0m × 2련
   - 장안제 : B × H × 련 = 1.5m × 2.5m × 1련
   - 마곡제 : B × H × 련 = 4.0m × 4.0m × 1련
6. 사업기간 : 2024. 12. ~ 2026. 12. (3개년)
7. 총사업비 : 1,83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전화 063-620-2076)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4호

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신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적성면 고원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4. 수혜면적 : 187.9ha
5. 사업개요 평야부 14조 6,392m
   - 송수관로 1조 1,454m
   - 용수관로 11조 3,496m
   - 용수개거 2조 1,442m
6. 사업기간 : 2024. 12. ~ 2027. 12.(4개년)
7. 총사업비 : 4,60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063-650-7071)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202-3	구	945.0	945.0	장아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2-2				
2	"	209-4	구	80.0	80.0	양현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26-10				
3	"	213-2	구	231.0	231.0	신종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519				
4	"	915	구	1,590.0	207.1	국(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0				
5	"	918-2	구	373.0	146.6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0				
6	"	산1-2	구	298.0	298.0	양병수 외1인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7	"	산1-4	임	23,010.0	691.9	남원양씨문학공파수우공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844-14				
8	"	산1-14	임	779.0	779.0	남원양씨문학공파수우공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844-14				
9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7-2	구	3,310.0	3,310.0	양규섭 외1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81				
10	"	산7-3	임	29,752.0	50.0	남원양씨문학공파수우공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844-14				
11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48	전	4,246.0	13.6	홍흥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22번길 36, 104동 302호				
12	"	57	전	1,389.0	150.0	김종석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마상길 35-6				
13	"	479	전	116.0	116.0	오종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아파트 106동 1408호				
14	"	775-10	도	701.0	22.8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0				
15	"	816	답	1,502.0	250.4	윤계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138-1				
16	"	816-1	답	940.0	10.3	윤계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138-1				
17	"	826-6	답	1,936.0	91.5	조삼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성전길 6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	828-5	답	1,091.0	94.7	풍천노씨문효공파성전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463				
19	"	830	답	1,407.0	17.6	남원양씨송암공파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377-1				
20	"	832-4	답	2,890.0	294.5	오산사석전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353				
21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830-1	답	1,385.0	296.5	양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377-1	양병태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11		
								양도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광2로 67, 201동 507호		
								양병오	남원시 도통동 576 부영5차아파트 506동 306호		
22	"	산83-4	임	241.0	241.0	유판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 전농에스케이아파트 115동 601호				
23	"	산83-5	임	7,034.0	30.0	유판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 전농에스케이아파트 115동 601호				
24	"	산84	임	19,937.0	83.1	풍천노씨문효공파성전종중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463				
25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296-1	답	60.0	60.0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차읍 경천로 33				
26	"	489-4	답	3,415.0	279.3	전영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175				
27	"	490	답	806.0	52.8	임군택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8				
28	"	490-1	답	1,202.0	12.3	임군택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8				
29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490-2	답	1,596.0	17.0	황의봉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64	황의홍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93-1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5호

대간선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 옥구읍 상평리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대간선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대간선1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 옥구읍 상평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031ha
5. 사업개요 : 용수로 재설치 및 용수잠관 보수보강 1식
   - 용 수 로 : 개거 재설치 B × H = 8.0m × 1.6m , L=960.0m
   - 용수잠관 : 보수보강 B × H × 련 = 2.0m × 2.0m × 2련, L= 40.0m
6. 사업기간 : 2024. 12. ~ 2027. 12. (4개년)
7. 총사업비 : 6,38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tel. 063-239-200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7호

구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구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구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운남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4. 수혜면적 : 166.5ha
5. 사업개요 평야부 12조 5,374m
   - 용수간선 3조 2,944m
   - 용수지선 8조 2,218m
   - 배수지선 1조 212m
6. 사업기간 : 2024. 11 ~ 2027. 12.(4개년)
7. 총사업비 : 3,535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063-650-707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2024-378호

풍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풍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풍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 치 :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유등면 창신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증대 등
4. 수혜면적 : 192.3ha
5. 사업개요 평야부 12조 5,132m
   - 용수간선 2조 1,005m
   - 용수지선 9조 3,479m
   - 배수지선 1조 648m
6. 사업기간 : 2024. 11 ~ 2027. 12.(4개년)
7. 총사업비 : 3,97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063-650-707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379호

동진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장등리, 봉황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동진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동진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장등리, 봉황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6조 2,066m, 배수로 12조 3,510m
6. 사업기간 : 2024년~ 2026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전화 063-580-1052)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380호

내광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내광리, 도장동 일원에 시행 예정인 내광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1. 사 업 명 : 내광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내광리, 도장동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76ha
5. 사업개요 : 용수로 12조 4,226m, 배수로 2조 136m
6. 사업기간 : 2025년~ 2026년
7. 총사업비 : 1,976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 063-540-117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2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누락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없도록 도모함(안 제4조제1항)

나.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의 세대당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보증금을 탄력적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 자치제도과(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예산과(비용추계), 법무행정과(자치법규안 심사)

라. 입법예고 : 2024. 12. 6. ~ 2024. 12.27.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6. ~ 12. 27.(21일간)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24. 12. 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전화번호 : 063-280-2368 / FAX 063-280-2359

3) 전자메일 : jjangdk9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천만원으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연장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소득계층: 최대 2회
2.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회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해당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① ---------- ---------- ---------- ----------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범위) ---------- 공공임대주택---------- ---------- ---------- ----------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 ---------- ----------

붙임 1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에 따라 종전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지출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23년 : 145억원(도비 50, 시군 75) * 저소득계층 230가구 + 신혼부부 625가구
- '24년 : 107.5억원(도비 43, 시군 64.5) * 저소득계층 230가구 + 신혼부부 및 청년 438가구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 출	저소득계층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신혼부부, 청년	12,500	8,750	6,250	6,250	6,250	40,000
	소계	14,500	10,750	8,250	8,250	8,250	50,000
수 입	회수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총비용		**12,500**	**8,750**	**6,250**	**6,250**	**6,250**	**40,000**

- 수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기간('20년 최초) 종료에 따른 융자금 회수 연간 평균금액 20억원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5,000	3,500	2,500	2,500	2,500	16,000
시군비		7,500	5,250	3,750	3,750	3,750	24,000
합 계		**12,500**	**8,750**	**6,250**	**6,250**	**6,250**	**40,000**

5. 부대의견 :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우선 지원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

6. 작 성 자 : 주택건축과 장도광(280-2368)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113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 및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1) 명칭변경 : 청년정책과 → 인구청년정책과

2) 과사무 신설 : 인구정책 조사·분석, 의료지원 및 응급처치 지도 등

3) 개방형직위 신설 : 외국인국제정책과장

나. 정 원

1) 전북특별자치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별표 3)

가) 정원의 총수 : 5,493명 → 5,497명, +4명(경찰직)

※ 일반직, 소방직 정원의 총수 변동없음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정원의 총수	**5,493명**	**5,497명**	**4명**
집행기관의 정원	1,853명	1,852명	△1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3명	124명	1명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	61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협 의 : 인권담당관, 예산과, 감사위원회사무국, 자치제도과,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4. 12. 6. ~ 2024. 12. 9.(3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1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예산과·청년정책과·행정정보과·법무행정과”를 “정책기획관·예산과·인구청년정책과·행정정보과·법무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과장·청년정책과장·법무행정과장”을 “예산과장·인구청년정책과장·법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정책과장”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4호, 제41호 및 제4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3호를 제5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를 제5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5호를 제4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0호를 제5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를 제5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를 제5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7호를 제5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2호를 제5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8호를 제5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4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1호) 중 “종합대책”을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5호) 중 “파악”을 “파악 및 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6.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분석

7.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추진

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10.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시행

11. 저출생 인식개선사업 추진

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1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21.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8.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26.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27. 인구감소위기 도-시·군 공동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제6항제23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5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행정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실행 총괄

24.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운영

25. AI 업무활용 확산 및 공모사업 추진

제14조제7항제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질병상담, 의료지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

26. 다수사상자 발생시 의료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7.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28. 119구급스마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의료지도 의사 근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3항 중 “대외국제소통국장”을 “대외국제소통국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하며, 진안·무주·장계·임실·순창119안전센터를 통할하여 운영한다”를 “분장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각각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진안·무주·장계·임실·순창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를 “소방경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자·금암·사정·팔봉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6. 23., 2023. 11. 10., 2023. 12. 15., 2024. 1. 12.>

119안전센터·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 및 제36조 관련)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삼천동2가·중인동·용복동·중화산동1가·중화산동2가·효자동1가·동완산동·서완산동1가·서완산동2가, 효자동2가(세내로서쪽~천잠로 동쪽, 쑥고개로 남쪽~효자동2가 남쪽 끝) 일원
	서부119안전센터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2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효자동2가(효자센터 관할구역 제외)·효자동3가·상림동 일원
	교동119안전센터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83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풍남동2가·풍남동3가·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전동·전동3가·다가동1가·다가동2가·다가동3가·경원동1가·경원동2가·경원동3가·중노송동·남노송동·교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 일원
	서신119안전센터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38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서노송동·다가동4가·고사동·태평동 일원
	평화119안전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5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평화동2가·평화동3가·석구동·원당동·서서학동 일원
전주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덕진동1가·덕진동2가·진북동·인후동2가·우아동3가(아중119안전센터 관할구역 제외)·인후동1가(팽나무1길 서쪽 및 반태산6길 서쪽) 일원
	아중119안전센터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6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우아동2가·우아동3가(동부대로 서쪽 중 안덕원3길 남쪽, 안덕원3길 10 제외)·산정동·금상동·인후동1가(팽나무1길 동쪽 및 반태산6길 동쪽) 일원
	팔복119안전센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3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팔복동2가·팔복동3가·팔복동4가·만성동·여의동·장동·중동 일원
	전미119안전센터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144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전미동2가·송천동1가·송천동2가·호성동1가·호성동2가·호성동3가 일원
	조촌119안전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10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원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남정동·여의동2가·고랑동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 산 소방서	사정119 안전센터	군산시 번영로 308	군산시 사정동·미장동·조촌동·개정동·선양동·중앙로3가동·미원동·둔율동·대명동·장재동·삼학동·수송동·오룡동·동흥남동·서흥남동·경장동·회현면·옥산면 일원
	회현119 지역대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411	군산시 회현면 일원
	금동119 안전센터	군산시 군산창길 1	군산시 신흥동·해망동·월명동·명산동·중앙로1가동·중앙로2가동·영동·금동·신창동·창성동·개복동·송창동·영화동·죽성동·장미동·평화동·금광동·송풍동·신풍동 신영동·중동·금암동 일원
	항만119 안전센터	군산시 외항로 436	군산시 소룡동, 내초동 일원
	비응119 안전센터	군산시 새만금북로 43	군산시 비응도동·오식도동·옥도면,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 일원
	고군산119 지역대	군산시 옥도면 무녀4길 74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대장도리·장자도리·무녀도리·신시도리·야미도리 일원
	지곡119 안전센터	군산시 백토로 223	군산시 나운동·문화동·지곡동·옥구읍 일원
	옥구119 지역대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15	군산시 옥구읍 일원
	내흥119 안전센터	군산시 사옥로 62	군산시 경암동·구암동·내흥동·성산면·나포면 일원
	산북119 안전센터	군산시 산북로 71-11	군산시 미룡동·산북동·신관동·개사동·옥서면 일원
	옥서119 지역대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리로 256	군산시 옥서면 일원
	대야119 안전센터	군산시 대야면 대야관통로 5	군산시 대야면·개정면·서수면·임피면 일원
	서수119 지역대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군산시 서수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 산 소방서	팔봉119 안전센터	익산시 무왕로 1338	익산시 팔봉동・석암동・석왕동・은기동・용제동・덕기동・정족동・임상동・월성동・부송동・어양동・영등동(공단119안전센터 관할 제외) 일원
	신동119 안전센터	익산시 인북로 397	익산시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남중동・창인동1가・창인동2가・신동・신용동 일원
	공단119 안전센터	익산시 선화로 429	익산시 신흥동・금강동・영등동(무왕로 남쪽, 고봉로 서쪽) 일원
	인화119 안전센터	익산시 목천로 301	익산시 인화동1가・인화동2가・평화동・목천동・석탄동・갈산동・주현동・마동・동산동・춘포면 일원
	모현119 안전센터	익산시 배산로 181	익산시 송학동・모현동1가・모현동2가・현영동・만석동・황등면・오산면 일원
	황등119 지역대	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55	익산시 황등면 일원
	함열119 안전센터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33	익산시 함열읍・낭산면・망성면・성당면・용동면・용안면・웅포면・함라면 일원
	용동119 지역대	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74	익산시 용동면・용안면 일원
	망성119 지역대	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726	익산시 망성면・낭산면 일원
	함라119 지역대	익산시 함라면 함안로 392	익산시 함라면・웅포면・성당면 일원
	금마119 안전센터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130	익산시 금마면・왕궁면・여산면・삼기면 일원
	여산119 지역대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0	익산시 여산면 일원
	왕궁119 지역대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16	익산시 왕궁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정읍소방서	하북119 안전센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	정읍시 하북동·수성동·연지동·장명동·구룡동·농소동·망제동·영파동·흑암동·용계동·공평동·북면 일원
	시기119 안전센터	정읍시 정읍남로 1421	정읍시 시기동·상동·금붕동·송산동·부전동·쌍암동·내장동·하모동·상평동·과교동·삼산동·진산동·신월동·용산동·교암동·신정동·초산동·입암면 일원
	입암119 지역대	정읍시 입암면 신마석길 37	정읍시 입암면 일원
	신태인119 안전센터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41	정읍시 신태인읍·태인면·감곡면·정우면 일원
	태인119 지역대	정읍시 정읍북로1193	정읍시 태인면 일원
	영원119 안전센터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48	정읍시 영원면·덕천면·고부면·이평면·소성면 일원
	칠보119 안전센터	정읍시 칠보면 태산로 2165	정읍시 칠보면·산내면·산외면·옹동면 일원
남원소방서	식정119 안전센터	남원시 요천로 1965	남원시 동충동·죽항동·하정동·쌍교동·노암동·어현동·신촌동·금동·조산동·천거동·왕정동·신정동·화정동·향교동·용정동·광치동·내척동·산곡동·도통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갈치동·대산면·주천면·이백면·덕과면·보절면·사매면·산동면 일원
	용성119 지역대	남원시 의총로 164	남원시 동충동·죽항동·노암동·금동·왕정동·향교동 일원
	사매119 지역대	남원시 사매면 덕오로 74	남원시 사매면 일원
	인월119 안전센터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28	남원시 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 일원
	운봉119 지역대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35-1	남원시 운봉읍 일원
	금지119 안전센터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430	남원시 금지면·송동면·주생면·대강면·수지면 일원
	수지119 지역대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2	남원시 수지면 일원
	대강119 지역대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7	남원시 대강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김 제 소방서	교동119 안전센터	김제시 벽성로 278	김제시 신풍동·용동·월성동·난봉동·황산동·오정동·서정동·양전동·도장동·요촌동·서암동·신곡동·하동·흥사동·교동·옥산동·갈공동·복죽동·입석동·장화동·신덕동·월봉동·신월동·연정동·제월동·명덕동·부량면·죽산면 일원
	검산119 안전센터	김제시 두월로 384	김제시 검산동·백학동·순동·상동동·백구면·용지면 일원
	백구119 지역대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038	김제시 백구면, 용지면 일원
	만경119 안전센터	김제시 만경읍 두릉길 49	김제시 만경읍·진봉면·광활면·성덕면·공덕면·청하면·백산면 일원
	금산119 안전센터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로 29	김제시 금산면·금구면·황산면·봉남면 일원
	금구119 지역대	김제시 금구면 금구로 44-28	김제시 금구면 일원
완 주 소방서	봉동119 안전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	완주군 봉동읍·용진읍·소양면·삼례읍 수계리 및 신탁리 일원
	소양119 지역대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87	완주군 소양면 일원
	삼례119 안전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27	완주군 삼례읍 일원(수계리 및 신탁리 제외)
	고산119 안전센터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49	완주군 고산면·화산면·운주면·경천면·동상면·비봉면 일원
	운주119 지역대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345	완주군 운주면·경천면 일원
	화산119 지역대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763	완주군 화산면·비봉면 일원
	혁신119 안전센터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2로 12	완주군 이서면 일원
	구이119 안전센터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85-8	완주군 구이면·상관면 일원
	상관119 지역대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70	완주군 상관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진 안 소방서	진안119 안전센터	진안군 진안읍 쇠징계로 9	진안군 진안읍·용담면·안천면·동향면·상전면·정천면·주천면 일원
	동향119 지역대	진안군 동향면 하양지1길 2	진안군 동향면 일원
	안천119 지역대	진안군 안천면 진무로 2998	진안군 안천면·용담면 일원
	주천119 지역대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	진안군 주천면·정천면 일원
	마령119 안전센터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077-24	진안군 마령면·성수면·백운면·부귀면 일원
	부귀119 지역대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4-7	진안군 부귀면 일원
무 주 소방서	무주119 안전센터	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126	무주군 무주읍·적상면·부남면·안성면 일원
	안성119 지역대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340	무주군 안성면 일원
	구천동119 안전센터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54	무주군 무풍면·설천면 일원
	설천119 지역대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607	무주군 설천면 일원
장 수 소방서	장계119 안전센터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36	장수군 장계면·계남면·계북면·천천면 일원
	장수119 안전센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2	장수군 장수읍·산서면·번암면 일원
	번암119 지역대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 462	장수군 번암면 일원
	산서119 지역대	장수군 산서면 충효로 2805-2	장수군 산서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임 실 소방서	임실119 안전센터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33	임실군 임실읍・청웅면・운암면・신평면・성수면・오수면・신덕면・삼계면・관촌면・강진면・덕치면・지사면 일원
	관촌119 지역대	임실군 관촌면 사선10길 14	임실군 관촌면・신평면 일원
	오수119 지역대	임실군 오수면 금암1길 39-13	임실군 오수면・삼계면・지사면 일원
	신덕119 지역대	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106	임실군 신덕면・운암면 일원
	강진119 지역대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73	임실군 강진면・청웅면・덕치면 일원
순 창 소방서	순창119 안전센터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24	순창군 순창읍·유등면·풍산면·금과면·팔덕면·동계면·적성면·구림면·인계면·쌍치면·복흥면 일원
	쌍치119 지역대	순창군 쌍치면 운암길 6	순창군 쌍치면 일원
	복흥119 지역대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57-1	순창군 복흥면 일원
	동계119 지역대	순창군 동계면 충효로 380	순창군 동계면·적성면 일원
	구림119 지역대	순창군 구림면 방화로 17	순창군 구림면·인계면 일원
고 창 소방서	고창119 안전센터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4	고창군 고창읍・아산면・고수면・신림면 일원
	아산119 지역대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831-1	고창군 아산면 일원
	무장119 안전센터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20-5	고창군 무장면・상하면・해리면・심원면 일원
	해리119 지역대	고창군 해리면 동시길 30	고창군 해리면 일원
	흥덕119 안전센터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 21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성내면 일원
	대산119 안전센터	고창군 대산면 공음대산로 932	고창군 대산면・성송면・공음면 일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부 안 소방서	부안119 안전센터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	부안군 부안읍·주산면·동진면·행안면·계화면·보안면·백산면·상서면·줄포면 일원
	계화119 지역대	부안군 계화면 창북3길 7	부안군 계화면·동진면 일원
	줄포119 지역대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68	부안군 줄포면·보안면·주산면 일원
	격포119 안전센터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64-17	부안군 변산면·진서면·하서면·위도면 일원
	변산119 지역대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46-1	부안군 변산면·하서면 일원
	진서119 지역대	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47	부안군 진서면 일원

[별표 3] <개정 2022. 12. 30., 2023. 4. 18., 2023. 6. 23., 2023. 8. 11., 2023. 12. 8., 2024.1.12., 2024. 6. 28., 2024. 8. 16.>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제65조 관련)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5,497	1,469	124	3,510	333	61
정무직계			4	1				3
정무직 소계			4	1				3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감사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계			14	6	8			
1급상당 소계			1	1				
		관리관·별정(경제부지사)	1	1				
4급상당 소계			7	1	6			
		비서실장	1	1				
		행정·별정	3		3			
		행정·기술·별정	3		3			
5급상당 소계			2	2				
		비서관	1	1				
		국제관계대사	1	1				
6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7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일반직계			1,794	1,230	116	91	299	58
2-3급 소계			3	2	1			
2~3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소계			11	10		1		
3		부이사관	11	10		1		
3-4급 소계			2	1				1
3~4		행정·기술	2	1				1
4급 소계			81	59	6	5	10	1
4		행정	34	18	6	4	5	1
4		행정·기술	43	41			2	
4		기술·농업연구	1			1		
4		기술·수의연구	1				1	
4		기술·녹지연구	1				1	
4		기술·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5급	소계	322	255	16	11	30	10
	5	행정	141	102	12	9	10	8
	5	공업	1	1				
	5	농업	4	3			1	
	5	녹지	3	2			1	
	5	해양수산	5	5				
	5	시설	18	15			2	1
	5	운전	1	1				
	5	행정·사회복지	13	13				
	5	행정·속기	1		1			
	5	행정·공업	13	12			1	
	5	행정·농업	16	14			2	
	5	행정·농업·농업연구·농촌지도	1			1		
	5	행정·사서·시설	1	1				
	5	행정·녹지	2	2				
	5	행정·해양수산	1	1				
	5	행정·보건	1	1				
	5	행정·환경	4	4				
	5	행정·시설	28	26	1			1
	5	행정·방재안전	1	1				
	5	행정·방송통신	3	3				
	5	행정·학예연구	1	1				
	5	행정·교육행정	1		1			
	5	공업·환경	1	1				
	5	공업·시설	2	1			1	
	5	농업·수의	6	6				
	5	녹지·녹지연구	1				1	
	5	수의·수의연구	6	2			4	
	5	해양수산·시설	1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5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5	보건·간호	5	5				
	5	보건·약무	1	1				
	5	행정·보건·간호	1	1				
	5	환경·시설	3	3				
	5	행정·공업·환경	3	3				
	5	행정·공업·시설	3	2		1		
	5	행정·농업·수의						
	5	행정·농업·시설	2	2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5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5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보건·공업	1	1				
	5	행정·환경·녹지	2	2				
	5	행정·환경·녹지·시설	1	1				
	5	행정·공업·녹지						
	5	행정·농업·사회복지						
	5	행정·환경·사회복지						
	5	행정·농업·환경·사회복지	1		1			
	5	농업·환경·수의	1	1				
	5	수의·수의연구·농업연구	2				2	
	5	농업·농업연구·수의·수의연구	1				1	
	5	행정·수의·보건·식품위생	1	1				
	5	행정·환경·시설	5	5				
	5	행정·시설·사회복지	1	1				
	5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5	보건·식품위생·의무	1	1				
	5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5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615	459	44	12	72	28
	6	행정	238	179	30	7	10	12
	6	세무	7	6				1
	6	전산	14	12		1		1
	6	사회복지	8	7			1	
	6	사서	2	1	1			
	6	속기	2		2			
	6	공업	21	18	1	1		1
	6	농업	25	21			3	1
	6	녹지	13	9			4	
	6	수의	11	3			8	
	6	해양수산	25	16			9	
	6	보건	4	4				
	6	환경	10	10				
	6	시설	70	57	1		7	5
	6	방송통신	6	6				
	6	운전	11	5	2		4	
	6	행정·세무	5	4				1
	6	행정·전산	10	9	1			
	6	행정·사회복지	8	6				2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6	행정·사서	1	1				
	6	행정·공업	6	4	1		1	
	6	행정·농업	8	6	1		1	
	6	행정·녹지	2	2				
	6	행정·보건	1	1				
	6	행정·환경	7	7				
	6	행정·시설	18	16	1			1
	6	행정·방재안전	1	1				
	6	행정·방송통신	2	2				
	6	행정·학예연구	1				1	
	6	행정·교육행정	1		1			
	6	전산·방송통신	3	2				1
	6	전산·시설	1	1				
	6	사회복지·보건	1	1				
	6	사회복지·간호	1	1				
	6	공업·환경	1	1				
	6	공업·운전	1				1	
	6	농업·시설	1				1	
	6	농업·수의	8	8				
	6	농업·농업연구	2			1	1	
	6	농업·수의·농업연구	1				1	
	6	녹지·시설	1	1				
	6	녹지·녹지연구	2				2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6	수의·농업연구	1				1	
	6	수의·수의연구	15	2			13	
	6	보건·식품위생	8	8				
	6	보건·의료기술	2	2				
	6	보건·간호	4	3		1		
	6	보건·약무	1	1				
	6	보건·환경	2	2				
	6	보건·공업	1	1				
	6	환경·시설	1	1				
	6	시설·방재안전	1	1				
	6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6	행정·공업·시설	3	3				
	6	행정·시설·녹지	1					1
	6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6	사회복지·보건·환경	1					1
	6	행정·보건·간호·약무	1	1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6	통신운영	1	1				
	6	기계운영	2			1	1	
	6	사무운영	5	4	1			
	7급	소계	572	359	37	35	126	15
	7	행정	195	144	25	10	7	9
	7	세무	7	7				
	7	전산	12	8		2	1	1
	7	사회복지	9	9				
	7	사서	1	1				
	7	속기	4		4			
	7	공업	27	12		5	9	1
	7	농업	16	11		1	4	
	7	녹지	12	7			5	
	7	수의	48				48	
	7	해양수산	15	8			7	
	7	보건	2	2				
	7	환경	14	11		3		
	7	시설	57	45	1	2	6	3
	7	방재안전	1	1				
	7	방송통신	6	4		1	1	
	7	위생	1			1		
	7	시설관리	1			1		
	7	운전	17	6	2	1	8	
	7	행정·세무	2	2				
	7	행정·전산	10	9	1			
	7	행정·사회복지	6	6				
	7	행정·사서	2	2				
	7	행정·공업	8	7	1			
	7	행정·농업	2	1	1			
	7	행정·녹지	1				1	
	7	행정·보건	2	1		1		
	7	행정·환경	4	3		1		
	7	행정·시설	7	6			1	
	7	행정·방재안전	3	3				
	7	행정·방송통신	1	1				
	7	행정·농촌지도	1			1		
	7	행정·교육행정	1		1			
	7	전산·방송통신	3	3				
	7	전산·농업연구	1			1		
	7	공업·녹지	2			1	1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7	공업·시설	2	2				
	7	농업·시설	1				1	
	7	농업·수의	8	7			1	
	7	행정·학예연구	1				1	
	7	농업·농업연구	1				1	
	7	농업·농촌지도	1			1		
	7	녹지·녹지연구	1				1	
	7	수의·수의연구	8				8	
	7	해양수산·환경	2	2				
	7	해양수산·방송통신	1	1				
	7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3				3	
	7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7	보건·식품위생	8	7		1		
	7	보건·약무	1	1				
	7	보건·간호	8	6		1	1	
	7	시설·방송통신	1					1
	7	시설·방재안전	2	2				
	7	시설·사회복지	1	1				
	7	방재안전·방송통신	1	1				
	7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7	행정·보건·간호	1	1				
	7	행정·농업·시설	1	1				
	7	행정·시설·해양수산	1	1				
	7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7	행정·공업·시설	1	1				
	7	행정·시설·공업·녹지	2				2	
	7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7	농업·시설·공업	1				1	
	7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7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7	전화상담운영						
	7	전기운영						
	7	기계운영						
	7	열관리운영						
	7	사육운영	1				1	
	7	사무운영	3	1			2	
	8급	소계	130	55	9	20	44	2
	8	행정	39	25	6	3	3	2
	8	전산	1				1	
	8	사회복지	2	2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8	사서	1			1		
	8	속기	2		2			
	8	공업	18	2	1	7	8	
	8	농업	6	3			3	
	8	녹지	6	1			5	
	8	해양수산	6	1			5	
	8	보건						
	8	환경	1			1		
	8	시설	12	6			6	
	8	운전	10	1		6	3	
	8	행정·전산	3	3				
	8	행정·사회복지	2	2				
	8	행정·농업	1	1				
	8	행정·시설	1				1	
	8	행정·보건	1	1				
	8	전산·방송통신	1	1				
	8	공업·환경	1	1				
	8	공업·운전	2				2	
	8	시설·방재안전	1	1				
	8	시설·공업	1				1	
	8	보건·식품위생	1	1				
	8	보건·간호	1	1				
	8	위생·조리	1	1				
	8	전기운영	1			1		
	8	전화상담운영						
	8	기계운영	5	1			4	
	8	농림운영	2				2	
	8	사무운영	1			1		
	9급	소계	49	25	3	7	13	1
	9	행정	1		1			
	9	공업	1			1		
	9	농업	1				1	
	9	시설	1	1				
	9	해양수산	1				1	
	9	방송통신	1	1				
	9	방송통신·방재안전	1	1				
	9	운전	3				3	
	9	행정·시설	2				2	
	9	행정·농업	1				1	
	9	위생·조리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9	통신운영	1		1			
	9	기계운영	1				1	
	9	사육운영	1				1	
	9	사무운영	33	22	1	6	3	1
	전문경력관 소계		9	5			4	
	가군 소계		1	1				
	가	비상계획관	1	1				
	가	경제분석전문위원						
	나군 소계		8	4			4	
	나	홍보연구원	1	1				
	나	화생방관리원	1	1				
	나	발간실장	1	1				
	나	보존문서관리원	1	1				
	나	농기계교육교관	3				3	
	나	농업인교육전문위원	1				1	
연구직계			199	5		160	34	
	연구관 소계		38	2		32	4	
	관	학예연구	4	2			2	
	관	농업연구	16			16		
	관	녹지연구	1				1	
	관	수의연구	1				1	
	관	보건연구	3			3		
	관	환경연구	3			3		
	관	보건연구·환경연구	10			10		
	연구사 소계		161	3		128	30	
	사	학예연구	6	2			4	
	사	기록연구	1	1				
	사	농업연구	62			59	3	
	사	녹지연구	8				8	
	사	수의연구	8				8	
	사	해양수산연구	7				7	
	사	보건연구	27			27		
	사	환경연구	34			34		
	사	보건연구·환경연구	8			8		
지도직계			26			26		
	지도관 소계		7			7		
	관	농촌지도	7			7		
	지도사 소계		19			19		
	사	농촌지도	19			19		
소방직계			3,456	223		3,233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소방직 소계		3,456	223		3,233		
		소방정	22	6		16		
		소방령	89	25		64		
		소방령·방송통신	1	1				
		소방경·공업6	1	1				
		소방경	209	38		171		
		소방위	323	44		279		
		소방장	474	53		421		
		소방교	760	37		723		
		소방사	1,577	18		1,559		
경찰직계			4	4				
	경찰직 소계		4	4				
		경감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예산과·청년정책과·행정정보과·법무행정과를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과) ① ---------- 정책기획관·예산과·인구청년정책과·행정정보과·법무행정과--.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예산과장·청년정책과장·법무행정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행정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예산과장·인구청년정책과장·법무행정과장----------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⑤ 인구청년정책과장----------.
<신 설>	6.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신 설>	7.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추진
<신 설>	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신 설>	10. 전북형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11. 저출생 인식개선사업 추진
<신 설>	12.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신 설>	1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1. ~ 20. (생 략)	29. ~ 48. (현행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신 설>	21.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21. 인구정책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1. ---------- 종합계획 ---
<신 설>	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2. ~ 24. (생 략)	2. ~ 4. (현행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25. 정부 인구정책 등 동향 파악	5. ---------- 파악 및 대응
26. 인구정책 홍보전략 수립	26.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27. 저출산 극복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7. 인구감소위기 도-시·군 공동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신 설>	28.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28. (생 략)	9. (현행 제28호와 같음)
29.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삭 제>
30.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수립 시행	<삭 제>
31. 출산장려 홍보 및 대외협력 등 지원	<삭 제>
32.·33. (생 략)	13.·14. (현행 제32호 및 제33호와 같음)
34.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에 따른 교육·홍보	<삭 제>
35. ~ 39. (생 략)	16. ~ 20. (현행 제35호부터 제39호까지와 같음)
40. (생 략)	22. (현행 제40호와 같음)
4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삭 제>
42.·43. (생 략)	24.·25. (현행 제42호 및 제43호와 같음)
44.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 추진	<삭 제>
45. ~ 53. (생 략)	49. ~ 57. (현행 제45호부터 제53호까

	지와 같음)
⑥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⑥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행정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실행 총괄
<신 설>	24. 생성형 AI 시스템 설계, 구축 및 운영
<신 설>	25. AI 업무활용 확산 및 공모사업 추진
23. ~ 51. (생 략)	26. ~ 54. (현행 제23호부터 제51호까지와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⑥ (생 략)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24.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25. 질병상담, 의료지원 정보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에 관한 사항
<신 설>	26. 다수사상자 발생시 의료지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27. 119구급대 이송병원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8. 119구급스마트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9. 의료지도 의사 근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0.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9. ~ 24. (생 략)	8. ~ 23. (현행 제9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신 설>	31.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단·과) ①·② (생 략)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에 두는 단·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국제소통국장, 소통기획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대외국제소통국장, 외국인국제정책과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하부조직) ① ~ ⑥ (생 략)	제33조(하부조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하며, 진안·무주·장계·임실·순창119안전센터를 통할하여 운영한다.	⑦ ---------- 분장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제34조(119안전센터 설치) ①·② (생 략)	제34조(119안전센터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각각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진안·무주·장계·임실·순창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단서 신설>	③ ---------- 소방경으로 보한다. 다만, 효자·금암·사정·팔봉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명 및 관련 조문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직급변경(소방직 39명) *정원 변동없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최근 3년간(2022~2024)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1.9%)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건비 (추가분)	1,071	207	210	214	218	222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6급 최홍창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 · 규칙에 따라 시 · 도는 5급 이상, 시 · 군 · 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 · 국장 · 과장 · 담당관 등 보조 · 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 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 · 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출장소장 · 119안전센터장 · 119구조대장 · 119구급대장 · 119구조구급센터장 · 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11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언론대응과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 및 공감을 위해 공보·미디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필요성 증대로 개방형 직위 지정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직위·직급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안 제3조)

1) 의정홍보담당관 :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나. 전문위원별 직급(별표)

1) 교육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 지방서기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 의 : 인권담당관, 예산과, 감사위원회사무국, 자치제도과,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4. 12. 6. ~ 2024. 12. 9.(3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12.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6. 8. 2, 2010. 6. 25, 2010. 7. 30, 2014. 6. 27, 2015. 7. 1, 2016. 9. 30, 2019. 12. 31., 2024. 6. 28.>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제2항 관련)

위원회	직 위	직 급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운영수석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기획행정 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제3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 최홍창(063-280-4238)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 · 규칙에 따라 시 · 도는 5급 이상, 시 · 군 · 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등 록 번 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 록 일 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409호	유한회사 새일기술산업 대표 이의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112-59	2024.11.27.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9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천안종)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 공 고 사 항

① 허가번호 : 제2024-35호

②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불교 천안종

③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11 305호

④ 대 표 자 : 김일배

⑤ 설립목적 : 주신 석가모니를 심중에 모시고 석가모니께서 교시한 말씀에 따라 신도들의 일상생활이 복되고 편안하도록 힘쓰는데 목적을 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89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외변산~원평 (지방도 736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영원면 지방도 736호선 인도정비공사		
도로공사 구간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331-2번지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331-2번지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4. 12. 06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5. 02. 28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지방도 736호선 기존 도로에 인도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도로환경 증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96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2월 6일

▣ 공 고 사 항

① 허가번호 : 제2024-36호

② 단체명칭 : 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③ 설립목적 : 지역사회 인구성장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허가연월일	비고
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 새싹협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2, 1층	신동열	1.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2. 지역청년부부 자녀 지원사업 3.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24.12.2.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04호

세무조사 관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자료 제출,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무조사 사전 및 중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6. ~ 2023. 12. 23.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대상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주 소	송달내용	공시송달사유
주식회사 케이디아이산업개발	170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96길 88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중지 통지서	폐문부재 등

4. 공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도보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등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자료 제출, 세무조사 중지 통지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063-280-2749)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내용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위한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내 용	비 고
㈜이산건설 (전기*)	토목공사업 (16-06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418호 (만성동)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 출석 요구	
㈜장청 (전경*)	건축공사업 (14-051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애통길 64		
㈜코이도 (이오*)	토목공사업 (14-052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36, 2층 (산북동, 청우빌딩)		
제원종합건설(주) (김미*)	건축공사업 (14-068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71-2 1층		
(유)하이텍건설 (김동*)	건축공사업 (14-016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56 203호 (고랑동)		
(유)서안 (서미*)	토목공사업 (14-05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 83 (호성동 1가)		
(유)현진종합건설 (박찬*)	토목공사업 (14-05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25-2		
㈜장안종합건설 (김학*)	건축공사업 (14-067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234		
㈜은성종합건설 (조정*)	건축공사업 (14-064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지곡안4길 5-1 (지곡동)		
(유)배재토건 (배재*)	토목건축공사업 (14-015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미륵사지로 1156		

2. 공시공고기간 : 2024. 12. 6. ~ 12. 20. (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에 출석 요구

5.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12. 20.(금) 10:00 ~ 15:40

나.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6. 출석시 지참자료 :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을 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7. 청문실시 통지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청문실시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3">㈜이산건설 (전기*)</td><td>업종명</td><td>토목공사업(16-060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418호 (만성동)</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0:0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td><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장청 (전경*)</td><td>업종명</td><td colspan="2">건축공사업(14-0517)</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애통길 64</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0:2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코이도 (이오*)</td><td>업종명</td><td colspan="2">토목공사업(14-052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36, 2층 (산북동, 청우빌딩)</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0:4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3">제원종합건설(주) (김미*)</td><td>업종명</td><td colspan="2">건축공사업(14-068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71-2 1층</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2">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2">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1:0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유)하이텍건설 (김동*)</td><td>업종명</td><td colspan="2">건축공사업(14-0160)</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256 203호 (고랑동)</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2">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2">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1:2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3">(유)서안 (서미*)</td><td>업종명</td><td colspan="2">토목공사업(14-0565)</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 83 (호성동 1가)</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4:0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유)현진종합건설 (박찬*)</td><td>업종명</td><td colspan="2">토목공사업(14-0580)</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25-2</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2">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2">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4:2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장안종합건설 (김학*)</td><td>업종명</td><td colspan="2">건축공사업(14-0679)</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234</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4:4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2">㈜은성종합건설 (조정*)</td><td>업종명</td><td colspan="2">건축공사업(14-0646)</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지곡안4길 5-1 (지곡동)</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5">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5">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2">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2">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5:0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td></tr>
<tr><td rowspan="2">2. 당 사 자</td><td>명칭(대표)</td><td colspan="3">(유)배재토건 (배재*)</td><td>업종명</td><td colspan="2">토목건축공사업(14-0155)</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미륵사지로 1156</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2023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사항이 확인됨</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건설업 영업정지(6개월)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 가능</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td></tr>
<tr><td colspan="2" rowspan="6">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td><td rowspan="3">의견 제출처</td><td>기관명</td><td>전북자치도</td><td>부서명</td><td>건설정책과</td><td>담당자</td><td>김경*</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td><td>전화번호</td><td>280-445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3">kkd890@korea.kr</td><td>FAX번호</td><td>280-3419</td></tr>
<tr><td colspan="2">의견 제출기한</td><td colspan="5">청문 종결 전까지</td></tr>
<tr><td rowspan="3">청 문</td><td>일 시</td><td colspan="4">2024. 12. 20.(금) 15:20</td></tr>
<tr><td>청문장소</td><td colspan="4">전북특별자치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td></tr>
<tr><td rowspan="2">주 재 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청문주재관</td></tr>
<tr><td>성 명</td><td colspan="3">김 태 *</td></tr>
</table>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건설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4. 12. 2.(월) 08:30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2036 올림픽 전북 유치 총력 대응** - 내년 1월부터 후보지 현장실시 등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되는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 대응에 철저히 임하기 바라며, - 실·국장과 출연기관장들은 연말·연초 주요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 당위성 및 전북의 강점 설명 등 도민들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주관: 2036하계올림픽유치TF본부/협조: 전 실국, 전 공기업·출연기관) ○ **2025년 국가예산 편성 마무리 대응 철저** - 2025년 국가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매우 긴박하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향을 주시하기 바람 - 또한, 미반영 핵심사업은 기재부가 동의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일일 상황보고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람 (주관: 정책기획관/협조: 전 실국) ○ **2025년 예산안 도의회 심사 대응 철저** - 도의회에서 2025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바, 도 핵심사업 및 문제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연말·연초 도정 주요업무 추진 철저** -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 그간 의회 및 업무관계자들의 제안 내용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바람 - 도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들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역동적인 도정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전북 반도체산업 발전 포럼,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 시 제안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 전 공기업·출연기관) ○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쇄신 방안 마련** - 최근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사회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직사회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또한, 실·국장과 출연기관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연말에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부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 바람 (주관: 전 실국, 전 공기업·출연기관)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도민 피해 최소화** -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단계별 대응 체제를 가동하여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바람 (주관: 자연재난과/협조: 해당 실국)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 **백일해(급성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추진** - 국내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청소년, 임산부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 백일해 발생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바람 (주관: 감염병관리과)

군산시 고시 제2024-157호

군산 도시관리계획(군산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대학 (군산대학교)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801,900	-	801,900	전북고56 (1991.2.9.)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1,900	-	801,900	100.00	
군산대학교	교사시설지	335,660	증) 5,200	340,860	42.51	
	운동시설지	83,775	증) 1,600	85,375	10.65	
	교통시설지	44,468	-	44,468	5.54	
	녹 지	337,997	감) 6,800	331,197	41.30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학교 (군산대학교)	○ 교사시설지 증가 335,660㎡ → 340,860㎡, 감) 5,200㎡ ○ 운동시설지 증가 83,775㎡ → 85,375㎡, 증) 1,600㎡ ○ 녹지 감소 337,997㎡ → 331,197㎡, 감) 6,800㎡	· 교육시설 확충에 따라 교육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편의 도모 · 보다 나은 교육환경 증진을 위해 운동시설지를 확보하여 농구장 조성

○ 건축물 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01,900	-	801,900	75,400.96	증)2,438.25	77,839.21	254,563.98	증)10,555.71	265,119.49	
교사시설지	교육기본시설	소 계				335,660	증)5,200	340,860	38,029.14	-	38,029.14	144,886.57	감)465.72	144,420.85	
		1	1	대학 본부	대학 본부	-	-	-	2,207.74	-	2,207.74	7,136.70	-	7,136.70	
		2	2	황룡 도서관	황룡 도서관	-	-	-	1,022.73	-	1,022.73	3,692.06	-	3,692.06	
		4	4	제1 학생회관	제1 학생회관	-	-	-	2,080.85	-	2,080.85	5,297.89	-	5,297.89	
		51	51	제2 학생회관	제2 학생회관	-	-	-	1,541.53	-	1,541.53	6,117.84	-	6,117.84	
		5	5	자연대 1,2호관	자연대 1,2호관	-	-	-	1,679.40	-	1,679.40	7,052.58	-	7,052.58	
		6	6	자연대 3호관	자연대 3호관	-	-	-	1,042.74	-	1,042.74	4,464.72	-	4,464.72	
		33	33	자연대 4호관	자연대 4호관	-	-	-	679.41	-	679.41	3,195.63	-	3,195.63	
		7	7	예술대 1호관	예술대 1호관	-	-	-	1,671.95	-	1,671.95	6,197.16	-	6,197.16	
		29	29	예술대 3호관	예술대 3호관	-	-	-	275.74	-	275.74	1,351.84	감)831.86	519.98	
		9	9	공대 1호관	공대 1호관	-	-	-	1,076.13	-	1,076.13	4,512.75	-	4,512.75	
		10	10	공대 2호관	공대 2호관	-	-	-	1,012.14	-	1,012.14	5,453.79	-	5,453.79	
		14	14	공대 3호관	공대 3호관	-	-	-	1,791.46	-	1,791.46	9,444.96	-	9,444.96	
		32	32	공대 5호관	공대 5호관	-	-	-	1,090.14	-	1,090.14	3,526.98	-	3,526.98	
		11	11	공대 4호관	공대 4호관	-	-	-	963.92	-	963.92	4,003.94	증))264.06	4,268.00	
		16	16	예술대 2호관	예술대 2호관	-	-	-	1,110.27	-	1,110.27	2,507.22	-	2,507.22	
		17	17	인문관	인문관	-	-	-	3,642.00	-	3,642.00	12,606.09	-	12,606.09	
		18	18	사회 과학관	사회 과학관	-	-	-	2,508.44	-	2,508.44	8,475.87	-	8,475.87	
		26	26	산학연 협동관	산학연 협동관	-	-	-	1,341.45	-	1,341.45	5,522.60	증)102.08	5,624.68	
		35	35	해양대 1호관	해양대 1호관	-	-	-	2,258.04	-	2,258.04	13,562.76	-	13,562.76	
		36	36	해양대 2호관	해양대 2호관	-	-	-	1,636.50	-	1,636.50	8,005.52	-	8,005.52	
		41	41	중앙 도서관	중앙 도서관	-	-	-	1,947.65	-	1,947.65	7,547.99	-	7,547.99	
		50	50	공동실험 실습관	공동실험 실습관	-	-	-	3,855.70	-	3,855.70	9,134.23	-	9,134.23	
		65	65	공과대학 통합교 육관	공과대학 통합교 육관	-	-	-	1,500.00	-	1,500.00	6,000.00	-	6,000.00	
		66	66	숲속 도서관	숲속 도서관	-	-	-	93.21	-	93.21	75.45	-	75.45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사시설지		소 계				-	-	-	20,874.36	감)1,104.64	19,769.72	74,416.75	증)2,629.43	77,046.18	
	지원시설	3	3	종합 교육관	종합 교육관	-	-	-	1,759.36	-	1,759.36	5,667.69	-	5,667.69	
		8	8	체육관	체육관	-	-	-	2,944.01	-	2,944.01	4,256.65	-	4,256.65	
		34	34	스포츠 과학관	스포츠 과학관	-	-	-	1,052.37	-	1,052.37	1,812.87	-	1,812.87	
		19	19	생활관 관리동	생활관 관리동	-	-	-	1,498.14	-	1,498.14	2,866.30	-	2,866.30	
		20	20	BTL 생활관	BTL 생활관	-	-	-	3,500.00	감)612.01	2,887.99	17,000.00	증)21.70	17,021.70	
		49	49	기숙사	기숙사		-	-	1,072.00	감)118.93	953.07	7,788.27	-	7,788.27	
		60	60	기숙사	기숙사		-	-	2,185.00	-	2,185.00	13,892.00	-	13,892.00	
		24	24	동력실	동력실	-	-	-	789.24	-	789.24	926.40	-	926.40	
		30	30	정문 안내실	정문 안내실	-	-	-	70.04	-	70.04	62.69	-	62.69	
		31	31	창업보육 센터	창업보육 센터	-	-	-	1,079.40	-	1,079.40	1,079.40	-	1,079.40	
		56	56	두드림 센터	두드림 센터	-	-	-	1,924.80	-	1,924.80	8,064.48	-	8,064.48	
		57	57	게스트 하우스	생활관 (누리관)	-	-	-	3,000.00	감)2,373.70	626.30	11,000.00	감)5,392.27	5,607.73	
		-	77	-	지역연계 복합센터	-	-	-	-	증)2,000.00	2,000.00	-	증)8,000.00	8,000.00	
	연구시설	소 계				-	-	-	4,920.50	증)2,694.15	7,614.65	16,440.67	증)11,903.00	28,343.67	
		44	44	디지털 기술정보 센터	디지털 기술정보 센터	-	-	-	2,281.19	증)194.15	2,475.34	8,963.06	감)97.00	8,866.06	
		55	55	황룡 문화관	황룡 문화관	-	-	-	1,989.78	-	1,989.78	4,952.58	-	4,952.58	
		58	58	해양생물 연구센터	해양생물 연구센터	-	-	-	649.53	-	649.53	2,525.03	-	2,525.03	
		-	78	-	해양융합 혁신연구 센터	-	-	-	-	증)2,500.00	2,500.00	-	증)12,000.00	12,000.00	
	부속시설	소 계				-	-	-	11,576.96	증)656.70	12,233.66	18,819.79	감)3,801.95	15,017.84	
		13	13	공대 부속공장	공학교육 실습관	-	-	-	549.40	-	549.40	5,190.20	감)4,640.80	549.20	
		15	15	조파 실험실	조파 실험실	-	-	-	445.80	-	445.80	445.80	-	445.80	
		12	12	구조재료 실험관	구조재료 실험관	-	-	-	260.00	-	260.00	279.47	-	279.47	
		25	-	목공창고	-	-	-	-	275.40	감)275.40	-	275.40	감)275.40	-	
		27	27	본부석	본부석	-	-	-	223.00	-	223.00	223.00	-	223.00	
		28	28	온 실	온 실	-	-	-	140.69	-	140.69	140.69	-	140.69	
		-	21	-	토조실험 실	-	-	-	-	증)200.00	200.00	-	증)200.00	200.00	
		-	22	-	제토실 가스창고	-	-	-	-	증)3.25	3.25	-	증)3.25	3.25	
		-	23	-	가마관리 제토실	-	-	-	-	증)426.60	426.60	-	증)426.60	426.60	
		37	37	양어장	양어장	-	-	-	1,499.96	-	1,499.96	1,971.20	-	1,971.20	
		38	38	수산공학 실험관	수산공학 실험관	-	-	-	219.60	-	219.60	309.60	-	309.60	

시설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사시설지		소 계				-	-	-	20,874.36	감)1,104.64	19,769.72	74,416.75	증)2,629.43	77,046.18	
	지원시설	3	3	종합교육관	종합교육관	-	-	-	1,759.36	-	1,759.36	5,667.69	-	5,667.69	
		8	8	체육관	체육관	-	-	-	2,944.01	-	2,944.01	4,256.65	-	4,256.65	
		34	34	스포츠과학관	스포츠과학관	-	-	-	1,052.37	-	1,052.37	1,812.87	-	1,812.87	
		19	19	생활관 관리동	생활관 관리동	-	-	-	1,498.14	-	1,498.14	2,866.30	-	2,866.30	
		20	20	BTL 생활관	BTL 생활관	-	-	-	3,500.00	감)612.01	2,887.99	17,000.00	증)21.70	17,021.70	
		49	49	기숙사	기숙사		-	-	1,072.00	감)118.93	953.07	7,788.27	-	7,788.27	
		60	60	기숙사	기숙사		-	-	2,185.00	-	2,185.00	13,892.00	-	13,892.00	
		24	24	동력실	동력실	-	-	-	789.24	-	789.24	926.40	-	926.40	
		30	30	정문 안내실	정문 안내실	-	-	-	70.04	-	70.04	62.69	-	62.69	
		31	31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	-	-	1,079.40	-	1,079.40	1,079.40	-	1,079.40	
		56	56	두드림센터	두드림센터	-	-	-	1,924.80	-	1,924.80	8,064.48	-	8,064.48	
		57	57	게스트하우스	생활관(누리관)	-	-	-	3,000.00	감)2,373.70	626.30	11,000.00	감)5,392.27	5,607.73	
		-	77	-	지역연계복합센터	-	-	-	-	증)2,000.00	2,000.00	-	증)8,000.00	8,000.00	
	연구시설	소 계				-	-	-	4,920.50	증)2,694.15	7,614.65	16,440.67	증)11,903.00	28,343.67	
		44	44	디지털기술정보센터	디지털기술정보센터	-	-	-	2,281.19	증)194.15	2,475.34	8,963.06	감)97.00	8,866.06	
		55	55	황룡문화관	황룡문화관	-	-	-	1,989.78	-	1,989.78	4,952.58	-	4,952.58	
		58	58	해양생물연구센터	해양생물연구센터	-	-	-	649.53	-	649.53	2,525.03	-	2,525.03	
		-	78	-	해양융합혁신연구센터	-	-	-	-	증)2,500.00	2,500.00	-	증)12,000.00	12,000.00	
	부속시설	소 계				-	-	-	11,576.96	증)656.70	12,233.66	18,819.79	감)3,801.95	15,017.84	
		13	13	공대 부속공장	공학교육실습관	-	-	-	549.40	-	549.40	5,190.20	감)4,640.80	549.20	
		15	15	조파실험실	조파실험실	-	-	-	445.80	-	445.80	445.80	-	445.80	
		12	12	구조재료실험관	구조재료실험관	-	-	-	260.00	-	260.00	279.47	-	279.47	
		25	-	목공창고	-	-	-	-	275.40	감)275.40	-	275.40	감)275.40	-	
		27	27	본부석	본부석	-	-	-	223.00	-	223.00	223.00	-	223.00	
		28	28	온 실	온 실	-	-	-	140.69	-	140.69	140.69	-	140.69	
		-	21	-	토조실험실	-	-	-	-	증)200.00	200.00	-	증)200.00	200.00	
		-	22	-	제토실 가스창고	-	-	-	-	증)3.25	3.25	-	증)3.25	3.25	
		-	23	-	가마관리 제토실	-	-	-	-	증)426.60	426.60	-	증)426.60	426.60	
		37	37	양어장	양어장	-	-	-	1,499.96	-	1,499.96	1,971.20	-	1,971.20	
		38	38	수산공학실험관	수산공학실험관	-	-	-	219.60	-	219.60	309.60	-	309.60	

시설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사시설지	부속시설	39	39	식품가공실습관	식품가공실습관	-	-	-	976.20	-	976.20	976.20	-	976.20	
		40	40	기관실습실	기관실습실	-	-	-	1,159.20	-	1,159.20	1,490.40	-	1,490.40	
		42	42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공학교육실습관 공장동	-	-	-	1,573.05	감)460.95	1,112.10	1,573.05	감)273.05	1,300.00	
		43	43	차고	차고	-	-	-	60.00		60.00	60.00		60.00	
		-	79	-	공학교육실습관 공장동 수변전실	-	-	-	-	증)54.00	54.00	-	증)54.00	54.00	
		45	45	인조잔디구장 관리소	인조잔디구장 관리소	-	-	-	45.36	-	45.36	45.36	-	45.36	
		46	46	학생테니스장 관리소	학생테니스장 관리소	-	-	-	140.00	-	140.00	140.00	-	140.00	
			75		교직원테니스장 관리소	-	-	-	-	증)450.00	450.00	-	증)450.00	450.00	
		47	47	골프학습장	골프학습장	-	-	-	932.70	-	932.70	960.18	-	960.18	
		48	48	외국인생활관	외국인생활관	-	-	-	167.92	-	167.92	803.78	-	803.78	
		52	52	학군단(학군단 창고)	학군단	-	-	-	573.22	감)15.00	558.22	1,600.00	감)20.75	1,579.25	
			54		학군단창고	-	-	-	-	증)15.00	15.00	-	증)15.00	15.00	
		53	53	버스차고	버스차고	-	-	-	1,500.00	-	1,500.00	1,500.00	-	1,500.00	
		59	59	해상안전교육장	해상안전교육장	-	-	-	330.00	-	330.00	330.00	-	330.00	
		61	61	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보관창고	-	-	-	50.00	-	50.00	50.00	증)21.68	71.68	
		62	62	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보관창고		-	-	50.00	-	50.00	50.00	증)21.68	71.68	
		-	74	-	창고				-	증)15.84	15.84	-	증)15.84	15.84	
		63	63	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보관창고		-	-	50.00	증)50.00	100.00	100.00	-	100.00	
		64	64	폐기물보관창고	폐기물보관창고	-	-	-	100.00	-	100.00	100.00	-	100.00	
		67	67	전시관	전시관	-	-	-	213.26	-	213.26	213.26	-	213.26	
		68	68	전망대(풍림관)	전망대(풍림관)	-	-	-	42.20	-	42.20	42.20	-	42.20	
		-	25	-	통학버스 승강장	-	-	-	-	증)75.00	75.00	-	증)75.00	75.00	
		-	76	-	대학본부 차고지	-	-	-	-	증)75.00	75.00	-	증)75.00	75.00	
		-	80	-	주차장	-	증)5,200.00	5,200.00	-	-	-	-	-	-	
소 계						83,775	증)1,600	85,375	-	-	-	-	-	-	
운동시설지		69	69	대운동장	대운동장	54,890	-	54,890	-	-	-	-	-	-	
		70	70	테니스장	테니스장1	5,210	-	5,210	-	-	-	-	-	-	
		71	71	농구장	농구장	2,780	-	2,780	-	-	-	-	-	-	
		72	72	테니스장2	테니스장2	3,575	-	3,575							
		73	73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17,320	-	17,320	-	-	-	-	-	-	
		-	81	-	농구장2	-	증)1,600.00	1,600.00	-	-	-	-	-	-	
교통시설지		도 로				44,468	-	44,468	-	-	-	-	-	-	
녹 지		녹 지				337,997	감)6,800	331,197	-	-	-	-	-	-	

Ⅱ.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도면 : “실음생략”

익산시 공고 제2024 - 238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배산지구 4호공원(배산 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열람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배산지구 4호공원(배산 보훈공원) 사업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4년 12월 06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익산 도시계획시설[배산지구 4호공원(배산 보훈공원)] 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
2. 사업의 내용

구분	시설명	사업시행지	사업개요	비고
편익시설	주차장	익산시 모현동2가 737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A=873.0㎡	신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익산시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익산시청)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024. 11. 15.)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5. 열람기간 : 2024. 12. 06.~2024. 12. 20.(14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의견서 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의견서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로 제출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

사업명 :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적 (㎡)	편입 지적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	읍면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익산	모현동2가	737	공원	1,690	873	익산시					
	계	(1필지)			1,690	873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 공원조성계(☎063-859-58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고시 제2024 - 133호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승인 고시

정읍시 부전동 1004번지 일원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4. 12. 6.
정 읍 시 장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가. 명 칭 :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04번지 일원 (변경없음)
다. 규 모 : 기정 253,413㎡ → 변경 314,336㎡

2. 사업시행자 : 정 읍 시 장 (변경없음)

3. 사업기간 : 2022. 08.(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 2026. 12. (변경없음)

4. 사 업 비

- 기 정 : 29,205백만원
- 변 경 : 42,740백만원 (국비 97.5, 도비 37.0, 시비 292.9)

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연월일 : 정읍시 고시 제2021-101호(2021.11.26.)

6. 사업개요

가. 도입시설 개요 (기정)

○ 기본시설 : 농산·임산물체험시설

○ 휴양·문화시설 : 복합놀이시설, 캠핑장, 연수원, 전수교육관, 매점 등

○ 기반시설 : 진입광장, 도로, 주차장

○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 녹지 등

나. 도입시설 개요 (변경)

○ 기본시설 : 농산·임산물체험시설,목재문화체험장

○ 휴양·문화시설 : 복합놀이시설, 캠핑장, 연수원, 워터파크, 문화공원, 시립박물관,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익스트림 스포츠, 동화마을, 기적의 놀이터 등

○ 기반시설 : 진입광장, 도로, 주차장

○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 녹지 등

다. 토지이용계획(기정)

토지이용계획 조서(기정)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3,413	100.00%	
기본시설 (전시관·학습관)	소 계	12,869	5.08%	
	농산·임산물체험시설	12,869	5.08%	
휴양·문화시설	소 계	89,865	35.46%	
	복합놀이시설	8,272	3.26%	
	캠핑장	18,540	7.32%	
	캠핑장1	9,090	3.59%	취사장 포함
	캠핑장2	9,450	3.73%	취사장 포함
	연수원	46,316	18.28%	
	연수원1	34,156	13.48%	
	연수원2	12,160	4.80%	
	전수교육관	5,761	2.27%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매 점	1,272	0.50%	
	워터파크	9,704	3.83%	
기반시설	소 계	55,874	22.05%	
	진입광장	1,912	0.75%	
	도 로	33,048	13.04%	
	주 차 장	20,914	8.25%	
	주차장1	3,181	1.26%	
	주차장2	2,533	1.00%	
	주차장3	7,037	2.78%	
	주차장4	2,580	1.02%	
	주차장5	5,583	2.20%	
기타시설	소 계	94,805	37.41%	
	관리사무소	528	0.21%	
	음 수 대	989	0.39%	귀갑약수
	화 장 실	566	0.22%	
	녹 지	92,722	36.59%	녹지율 30%이상
	녹지원	19,441	7.67%	
	다목적광장	24,972	9.85%	
	조성녹지	40,049	15.80%	
	하 천	8,260	3.26%	월영천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구 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14,336	100.00%	
기본시설 (전시관·학습관)	소 계	16,141	5.13%	
	농산·임산물체험시설	11,663	3.71%	
	목재문화체험장	4,478	1.42%	
휴양·문화시설	소 계	139,939	44.52%	
	복합놀이시설	8,064	2.57%	
	캠핑장	18,540	5.90%	
	캠핑장1	9,090	2.89%	취사장 포함
	캠핑장2	9,450	3.01%	취사장 포함
	연수원	46,316	14.73%	
	연수원1	34,156	10.87%	
	연수원2	12,160	3.87%	
	워터파크	8,488	2.70%	
	문화공원	9,890	3.15%	
	시립박물관	13,334	4.24%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6,788	2.16%	
	익스트림 스포츠	3,400	1.08%	
	동화마을	8,351	2.66%	
	상가시설	1,142	0.36%	
	기적의 놀이터	10,827	3.44%	
	순환열차	4,799	1.53%	
기반시설	소 계	58,096	18.48%	
	진입광장	1,887	0.60%	
	도 로	30,258	9.63%	
	주 차 장	26,186	8.33%	4개소, 831면
	주차장3	3,338	1.06%	
	주차장5	5,583	1.78%	
	주차장6	9,986	3.18%	
	주차장7	7,261	2.31%	
기타시설	소 계	100,160	31.86%	
	관리사무소	572	0.18%	
	화 장 실	683	0.22%	
	녹 지	98,905	31.40%	녹지율 30%이상
	녹지원	21,956	6.98%	
	다목적광장	24,757	7.88%	
	조성녹지	43,715	13.91%	
	하 천	8,260	2.63%	월영천

7.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생략”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관광과(☎063-539-51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4-166호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12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제시 요촌동 1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나. 명 칭 :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680㎡
 나. 규 모

구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상4층	358.64	1,400	건폐율 52.74% 용적률 205.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제시장 (공영개발과)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당 초 : 2024.02.13.~2024.12.31.
 나. 변 경 : 2024.02.13.~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680					
1	김제시 요촌동	190-2	대	51	51	김제시				
2	김제시 요촌동	190-4	대	629	629	김제시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장물 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김제시 요촌동	190-2	대	점포 (1~3층)	시멘트 벽돌조 판넬 지붕	109.5㎡	김제시				

완주군 고시 제2024-115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1호로 고시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및 완주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12월 6일

1.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21,322,705	-	821,322,705	100.0	
도시지역		150,045,991	-	150,045,991	18.3	
관리지역	소 계	137,905,316	-	137,905,316	16.8	
	보전관리지역	48,098,439	감) 18	48,098,421	5.9	
	생산관리지역	30,838,611	-	30,838,611	3.8	
	계획관리지역	58,968,266	증) 18	58,968,284	7.2	
농림지역		487,194,398	-	487,194,398	59.3	
자연환경보전지역		46,177,000	-	46,177,000	5.6	

※ 기정은 완주군 고시 제2021-28호[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도로,주차장,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적용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상관면 신리 914-19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8	100% 이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2.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전북경찰청 항공대	공공청사	완주군 상관면 신리 914-19번지 일원	-	증)10,500	10,500	금 회	

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전북경찰청 항공대	· 공공청사 결정 - 면 적 : 10,500㎡	· 전북경찰청 항공대 청사 재건축을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3.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4498) 및 완주군 건설도시과(063-290-2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4 - 1867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12월 6일

1. 공사의 명칭 :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사업은 지방하천인 석학천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및 편익증진을 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치	하천종류	하천명	하천정비구간		사 업 량	비고
			시점	종점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원	지방하천	석학천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축제 및 보축 2.43km 배수암거 1개소 배수통관 16개소 교량 2개소, 가교 2개소 여울형보 6개소, 취수통관 5개소	

3.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일원

4.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수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24. 6. ~ 2026.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권리자 : 붙임참조

7. 변경내용 : 세목고시(지장물) 추가

8. 설계도서 및 위치도 열람장소 : 완주군청 혁신개발과 하천시설팀

9.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이상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완주군에서 직접 관리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혁신개발과 하천시설팀(☎063-290-2922, 29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1	화산	운곡	928-1	1,504	답	928-3	164	국*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6	지분 1/2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3길 3***	지분 1/2
2	화산	운곡	928-1	1,504	답	928-4	10	국*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6	지분 1/2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신화3길 3***	지분 1/2
3	화산	운곡	917-1	1,135	답	917-4	154	국*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5***30	
4	화산	운곡	916-1	1,730	답	916-4	354	국*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58번길 9, ***동 1***호(내동, 제이파크)	
5	화산	운곡	915	113	천	915-2	45	최*왕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6	
6	화산	운곡	912	4,415	전	912-1	23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5****36	
7	화산	운곡	산 62	72,659	임	산 62-2	29	오*택	전주시 평화동1가 4***3	지분 1/3
								오*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동 1***호(죽전동, 도담마을휴먼빌아파트)	지분 1/3
								오*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3-10, ***동 1***호(이문동,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지분 1/3
8	화산	운곡	산 62	72,659	임	산 62-3	16	오*택	전주시 평화동1가 4***3	지분 1/3
								오*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동 1***호(죽전동, 도담마을휴먼빌아파트)	지분 1/3
								오*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3-10, ***동 1***호(이문동,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지분 1/3
9	화산	운곡	산 62	72,659	임	산 62-4	146	오*택	전주시 평화동1가 4***3	지분 1/3
								오*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동 1***호(죽전동, 도담마을휴먼빌아파트)	지분 1/3
								오*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2길 3-10, ***동 1***호(이문동,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지분 1/3
10	화산	운곡	929	2,625	답	929	2,625	국*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5길 **(대조동)	지분 1323/5250
								국*회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30, 4동 1***호(내동, 놀뫼타운)	지분 3927/5250
11	화산	운곡	932-1	4,264	답	932-6	512	국*동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0***6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12	화산	운곡	산 31	24,000	임	산 31-1	682	국*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길 2***, 15동 ***호(방배동, 임광아파트)	
13	화산	운곡	산 24	33,128	임	산 24-8	22	방*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	
14	화산	운곡	산 24	33,128	임	산 24-9	20	방*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	
15	화산	운곡	828	796	전	828-2	481	국*실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16	화산	운곡	827-2	758	답	827-8	55	국*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8***1	
17	화산	운곡	827-1	777	답	827-7	251	국*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5***20	
18	화산	운곡	822-1	2,453	답	822-8	162	국*인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19	화산	운곡	799	628	답	799	628	안*락	논산군 가야곡면 광암리 ***	지분 1/3
								완주군		
20	화산	운곡	798	56	답	798	56	안*락	논산군 가야곡면 광암리 ***	지분 1/3
								안*희	논산군 가야곡면 야촌리 ***	지분 1/3
								안*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15, ***동 ***호(송강동, 한솔아파트)	지분 1/3
21	화산	운곡	798-4	247	답	798-4	247	안*락	논산군 가야곡면 광암리 ***	지분 1/3
								완주군		
22	화산	운곡	792-2	205	구	792-2	205	이*례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23	화산	운곡	811	3,600	답	811-3	22	유*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24	화산	운곡	산 95-1	68	임	산 95-1	68	이*석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산*	
25	화산	운곡	산 95	37,915	임	산 95-2	114	이*석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산*	
26	화산	운곡	산 96-1	194	임	산 96-1	194	이*례	대전시 중구 대흥동 2*** 현대아파트 5동 ***호	
27	화산	운곡	782-1	129	답	782-1	129	정*옥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28	화산	운곡	767	77	천	767	77	김*해	충청남도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	
29	화산	운곡	761-7	73	도	761-17	16	장*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안*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이*용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김*기	김제군 진봉면 은파리 ***	지분 1/4
30	화산	운곡	766	96	전	766	96	안*명	미등기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31	화산	운곡	761-13	96	천	761-13	96	장*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안*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이*용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지분 1/4
								김*기	김제군 진봉면 은파리 ***	지분 1/4
32	화산	운곡	761-6	990	답	761-16	305	국*은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번길 35, ***동 ***호(상동, 비파1차아파트)	
33	화산	운곡	761-9	685	천	761-18	600	장*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안*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이*용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김*기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34	화산	운곡	761-9	685	천	761-19	52	장*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안*희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이*용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지분 1/4
								김*기	김제군 진봉면 은파리 ***	지분 1/4
35	화산	운곡	720-1	3,523	답	720-14	710	박*옥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36	화산	운곡	769-1	655	목	769-5	53	국*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 1***호(동원맨션)	
37	화산	운곡	768-1	37	답	768-1	37	김*형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	
38	화산	운곡	768-3	75	답	768-3	75	김*형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	
39	화산	운곡	761-1	471	답	761-14	253	김*수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동 1***호(정상동, 유성아파트)	
40	화산	운곡	761-1	471	답	761-15	13	김*수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동 1***호(정상동, 유성아파트)	
41	화산	운곡	732	1,177	답	732-1	1,033	국*환	전주군 화산면 운곡리 ***	
42	화산	운곡	733-1	509	답	733-6	18	국*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 1***8호(동원맨션)	
43	화산	운곡	733-1	509	답	733-7	8	국*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 1***8호(동원맨션)	
44	화산	운곡	731	142	천	731	142	장*익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8***1	
45	화산	운곡	730-1	201	답	730-1	201	유*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39***1	
46	화산	운곡	730	3,258	답	730-4	936	유*준	서울 구로구 구로동 39***1	
47	화산	운곡	719-1	2,294	답	719-6	40	신*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1***(중화산동2가)	
48	화산	운곡	712	1,012	답	712-1	612	신*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1***(중화산동2가)	
49	화산	운곡	714-1	1,463	답	714-10	2	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	
50	화산	운곡	714-3	2,670	답	714-11	123	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	
51	화산	운곡	714-3	2,670	답	714-12	1,191	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	
52	화산	운곡	714-9	660	대	714-13	6	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	
53	화산	운곡	703-8	775	답	703-11	28	국*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동 ***호(금정동, 주공아파트)	
54	화산	운곡	703-4	228	답	703-9	109	국*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동 ***호(금정동, 주공아파트)	
55	화산	운곡	703-4	228	답	703-10	3	국*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동 ***호(금정동, 주공아파트)	
56	화산	운곡	703-2	551	답	703-2	551	국*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호계아크로리버 비-1***	
57	화산	운곡	699-2	2,169	답	699-3	628	양*호	대전시 중구 탄방동 7***2	지분1/3
								양*호	대전시 중구 옥계동 ***4	지분1/3
								양*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4길 1***2,***호(효자동3가)	지분1/6
								양*필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5길 1, ***동 1***호(마동, 자연애아파트)	지분1/6
58	화산	운곡	721	370	답	721-1	311	장*근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산 ***	
59	화산	운곡	722	2,416	전	722-1	276	양*호	대전시 중구 탄방동 7***2	지분1/3
								양*호	대전시 중구 옥계동 8***	지분1/3
								양*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4길 1***2, ***호(효자동3가)	지분1/6
								양*필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5길 1, ***동 1***호(마동, 자연애아파트)	지분1/6
60	화산	운곡	722	2,416	전	722-2	12	양*호	대전시 중구 탄방동 7***2	지분1/3
								양*호	대전시 중구 옥계동 8***	지분1/3
								양*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지분1/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황강서원 4길 1***2, ***호(효자동3가)	6
								양*필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5길 1, ***동 1***호(마동, 자연애아파트)	지분1/6
61	화산	운곡	710	182	천	710	182	장*상	대전시 중구 유천동 34***3	
62	화산	운곡	709	1,286	답	709-1	251	서*권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63	화산	운곡	707	1,240	천	707	1,240	이*현	미등기(눈산군 도곡면 초현리)	
64	화산	운곡	706	231	천	706	231	국*환	전주군 화산면 운곡리***	
65	화산	운곡	697-1	2,098	답	697-9	513	박*숙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66	화산	운곡	700-2	301	천	700-3	19	장*은	익산시 함열읍 와리 5***35	
67	화산	운곡	689-2	2,605	전	689-4	514	임*례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	
68	화산	운곡	산 11	69,989	임	산 11-6	419	국*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6	지분 68336/69989
								양*택	서울 성북구 종암동 3-***	지분 1653/69989
69	화산	운곡	산 11	69,989	임	산 11-7	73	국*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6	지분 68336/69989
								양*택	서울 성북구 종암동 3***87	지분 1653/69989
70	화산	운곡	산 11	69,989	임	산 11-8	72	국*동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6	지분 68336/69989
								양*택	서울 성북구 종암동 3-***	지분 1653/69989
71	화산	운곡	698	1,078	답	698-1	215	강*신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40***7	
72	화산	운곡	691	374	천	691-1	52	성*용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73	화산	운곡	690	1,550	전	690-1	1,063	성*용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74	화산	운곡	688	2,023	천	688-1	1,797	배*환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	
75	화산	운곡	675	1,055	답	675-1	7	장*원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6***4	
76	화산	운곡	675	1,055	답	675-2	19	장*원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6***4	
77	화산	운곡	687	1,395	전	687	1,395	차*정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78	화산	운곡	677	3,871	천	677-1	2,895	장*원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운곡로 ***	
79	화산	운곡	678	278	전	678	278	장*병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9가길 18, ***호(상도동, 성우빌라)	
80	화산	운곡	686-1	2,596	전	686-3	396	정*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	지분1/2
								정*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	지분1/2
81	화산	운곡	686	660	대	686-2	101	정*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	지분1/2
								정*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60***02	지분1/2
82	화산	운곡	684	83	전	684-1	11	정*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	지분1/2
								정*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탑마을 60***02	지분1/2
83	화산	운곡	462	290	대	462-4	37	조*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	
84	화산	운곡	657	740	답	657-1	306	장*곤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83-60, ***동 ***호(영등동, 부영아파트)	
85	화산	운곡	679	588	답	679-2	434	****호판공파 고산종중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대표자 장*열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119***0	
86	화산	운곡	680	3,002	답	680-2	1,067	임*현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87	화산	운곡	681	605	답	681-1	443	장*혁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88	화산	운곡	683-1	1,382	답	683-4	542	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3번길 26, ***동 ***호(행신동, 샘터마을)	
89	화산	운곡	462-1	2,053	답	462-3	32	조*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1	
90	화산	운곡	927-1	2,072	답	927-5	8	국*희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30,4동 1***호(내동,늘뫼타운)	
91	화산	운곡	926-1	2,413	답	926-5	56	홍*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5***27	
92	화산	운곡	925	1,980	답	925-1	22	유*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5***-9	
93	화산	운곡	711-2	1,709	답	711-3	1,383	국(국가보훈처)		
94	화산	운곡	1081	14,236	구거	1081-1	1,276	국(농수산부)		
95	화산	운곡	1081	14,236	구거	1081-2	4,274	국(농수산부)		
96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3	3,048	국(건설교통부)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목	편입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지번	면적 (㎡)	성 명	주 소	
97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4	2,686	국(건설교통부)		
98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5	22,131	국(건설교통부)		
99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6	12,565	국(건설교통부)		
100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7	534	국(건설교통부)		
101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8	1,212	국(건설교통부)		
102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19	459	국(건설교통부)		
103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20	2,553	국(건설교통부)		
104	화산	운곡	1103	52,909	하천	1103-21	4,291	국(건설교통부)		
합 계							87,337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지장물 등의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토 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 소	
1	화산	운곡	732외	소나무		63	주	국*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11, 동원맨션 ****호	
2	화산	운곡	712	꽝꽝나무		53	주	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3	화산	운곡	722	집수정		1	식	양*호	대전시 중구 옥계동 *-**	지분 1/2
4	화산	운곡	722	감나무		2	주	양*호	대전시 중구 옥계동 *-**	지분 1/2
5	화산	운곡	709	전기계량기		1	식	장*성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	
6	화산	운곡	697-1	관정		1	식	박*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7	화산	운곡	697-1	감나무		1	주	박*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8	화산	운곡	697-1	고욤나무		1	주	박*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9	화산	운곡	703-2	전기계량기		1	식	유*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석천길 ***	
10	화산	운곡	686 686-1	관정	관정사 포함	1	식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1	화산	운곡	686 686-1	전기계량기		1	식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2	화산	운곡	686 686-1	가이즈카 향나무		1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3	화산	운곡	686 686-1	옥향		1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4	화산	운곡	686 686-1	회양목		2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5	화산	운곡	686 686-1	명자나무		5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6	화산	운곡	686 686-1	대추나무		5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7	화산	운곡	686 686-1	황금측백		5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8	화산	운곡	686 686-1	향나무		3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19	화산	운곡	686 686-1	주목		20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20	화산	운곡	686 686-1	밤나무		1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21	화산	운곡	686 686-1	감나무		4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황 및 구조	편입 물량		토 지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 소	
22	화산	운곡	686 686-1	오가피나무		3	주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23	화산	운곡	686 686-1	수목울타리		55	m	정*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	

완주군 공고 제2024-1888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호정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완주 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효정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12월 6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산10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사업
   - 명 칭 : 호정공원묘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공동묘지 : 473,582.7㎡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차분(완료)	2차분		
총 계	473,582.7	287,484.7	186,098	100.0	
묘지시설용지	101,106	55,986	45,120	21.4	
납골시설용지	24,534	21,828	2,706	5.2	
기반시설용지	51,357	38,282	13,075	10.8	
녹 지 용 지	296,585.7	171,388.7	125,197	62.6	

   나. 도로(소로1-2호) : L=630m, B=10m, A=14,098.4㎡(완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재단법인 호정공원 이사장 신영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로 381-64
5.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차분 : 2009. 07. 24. ~ 2020. 04. 03.(완료)
   - 2차분 : (당초) 2009. 07. 24. ~ 2024. 12. 31.
     (변경) 2009. 07. 24.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읍	리	지번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필지					**473,582.7**	**473,582.7**					
1	화산	운곡	1135	임	103,397.3	103,397.3	재단법인 호정공원				
2	화산	운곡	1136	묘	183,763.1	183,763.1	재단법인 호정공원				
3	화산	운곡	1137	임	324.3	324.3	재단법인 호정공원				
4	화산	운곡	749-1	전	23.0	23.0	신영옥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2길 19-4	전주세무서		압류
5	화산	운곡	산100-7	임	158,400.0	158,400.0	재단법인 호정공원				
6	화산	운곡	산100-18	유	2,863.0	2,863.0	재단법인 호정공원				
7	화산	운곡	산100-21	임	24,812.0	24,812.0	재단법인 호정공원				

7.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고시 제2024-163호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관련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팀 ☏063-560-25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24년 12월 6일

1.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원지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	165,371.5	-	165,371.5	전라북도고시 2010-171호 2010.07.09	계획관리지역

2. 고창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총괄(변경)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 축 면 적(㎡)						비고
							건축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65,371.5	-	165,371.5	100.0	4,604.37	증) 50.00	4,654.37	6,563.6	증) 50.00	6,613.60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1,316.3	증) 1,903.7	3,220.0	1.9	-	-	-	-	-	-	
휴양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취사장, 야유회장	숙박시설, 야영장, 취사장,	18,568.8	감) 899.0	17,669.8	10.7	413.07	-	413.07	573.15	-	573.15	
특수시설	식물원	식물원	3,439.8	-	3,439.8	2.1	1,033.58	-	1,033.58	1,008.22	-	1,008.22	
편익시설	일반음식점 및 매점, 일반목욕장	일반음식점 및 매점, 일반목욕장 펫카페	12,944.8	증) 340.0	13,284.8	8.0	1,263.53	증) 50.00	1,313.53	1,913.13	증) 50.00	1,963.13	펫카페 신축
관리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광장, 관리동	64,232.2	감) 265.2	63,967.0	38.7	206.00	-	206.00	206.00	-	206.00	
기타시설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웰빙식품센터 계류, 벽천, 배수지	16,534.5	-	16,534.5	10.0	1,688.19	-	1,688.19	2,863.10	-	2,863.10	
녹지시설	녹 지	녹 지	48,335.1	감) 1079.5	47,255.6	28.6	-	-	-	-	-	-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물 면적(㎡)						건축물		비고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높이(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65,371.5	0.0	165,371.5	100.0	4,604.37	50.00	4,654.37	6,563.60	50.00	6,613.60	-	-	
유희시설	소 계				1,316.30	1,903.70	3,220.00	1.9%	0.00	0.00	0.00	0.00	0.00	0.00	-	-	
	1-1	1-1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1,316.30	0.0	1,316.30	0.8%	0	0	0	0	0	0	-	-	
	-	1-2	-	반려동물놀이터	0.00	1,903.7	1,903.70	1.2%	0	0	0	0	0	0	-	-	
휴양시설	소 계				18,568.80	-899.0	17,669.80	10.7%	413.07	0.00	413.07	573.15	0.00	573.15	-	-	
	3-1	3-1	숙박시설	숙박시설	6,870.00	0.0	6,870.00	4.2%	362.8	0	362.8	522.88	0	522.88	2	2	
	3-2	3-2	야영장1	야영장1	5,426.50	0.0	5,426.50	3.3%	0	0	0	0	0	0	-	-	
	3-3	3-3	야영장2	야영장2	5,236.20	0.0	5,236.20	3.2%	0	0	0	0	0	0	-	-	
	3-4	3-4	취사장	취사장	137.1	0.0	137.1	0.1%	50.27	0	50.27	50.27	0	50.27	1	1	
	3-5	-	야유회장	-	899	-899.0	0	0.0%	0	0	0	0	0	0	-	-	
특수시설	소 계				3,439.80	0.0	3,439.80	2.1%	1,033.58	0.00	1,033.58	1,008.22	0.00	1,008.22	-	-	
	4-1	4-1	식물원	식물원	3,439.80	0.0	3,439.80	2.1%	1,033.58	0.00	1,033.58	1,008.22	0.00	1,008.22	1	1	
편익시설	소 계				12,944.80	340.0	13,284.80	8.0%	1,263.53	50.00	1,313.53	1,913.13	50.00	1,963.13	-	-	
	5-1	5-1	일반음식점 및 매점	일반음식점 및 매점	1,799.50	0.0	1,799.50	1.1%	334	0	334	434	0	434	2	2	
	5-2	5-2	매 점	매 점	1,615.10	0.0	1,615.10	1.0%	300	0	300	300	0	300	1	1	
	5-3	5-3	일반 목욕장	일반 목욕장	9,530.20	0.0	9,530.20	5.8%	629.53	0	629.53	1,179.13	0	1,179.13	2	2	
	-	5-4	-	펫카페	0.00	340.0	340.00	0.2%	0	50	50	0.00	50	50.00			휴게음식점(펫카페) 50㎡신축
관리시설	소 계				64,232.20	-265.2	63,967.00	38.7%	206.00	0.00	206.00	206.00	0.00	206.00	-	-	
			도 로	도 로	23,000.70	-265.2	22,735.50	13.7%	0	0	0	0	0	0	-	-	
	6-1	6-1	주차장1	주차장1	1,191.30	0.0	1,191.30	0.7%	0	0	0	0	0	0	-	-	
	6-2	6-2	주차장2	주차장2	3,288.40	0.0	3,288.40	2.0%	0	0	0	0	0	0	-	-	
	6-3	6-3	주차장3	주차장3	10,987.30	0.0	10,987.30	6.6%	0	0	0	0	0	0	-	-	
	6-4	6-4	주차장4	주차장4	192.4	0.0	192.4	0.1%	0	0	0	0	0	0	-	-	
	6-5	6-5	화장실1	화장실1	312.9	0.0	312.9	0.2%	100.54	0	100.54	100.54	0	100.54	1	1	
	6-6	6-6	화장실2	화장실2	321.7	0.0	321.7	0.2%	55.19	0	55.19	55.19	0	55.19	1	1	
	6-7	6-7	중앙광장	중앙광장	15,192.90	0.0	15,192.90	9.2%	0	0	0	0	0	0	-	-	
	6-8	6-8	진입광장1	진입광장1	2,110.00	0.0	2,110.00	1.3%	0	0	0	0	0	0	-	-	
	6-9	6-9	진입광장2	진입광장2	113.6	0.0	113.6	0.1%	0	0	0	0	0	0	-	-	
	6-10	6-10	이벤트광장	이벤트광장	2,142.10	0.0	2,142.10	1.3%	0	0	0	0	0	0	-	-	
	6-11	6-11	상징광장	상징광장	4,599.30	0.0	4,599.30	2.8%	0	0	0	0	0	0	-	-	
	6-12	6-12	잔디광장	잔디광장	640.8	0.0	640.8	0.4%	0	0	0	0	0	0	-	-	
	6-13	6-13	관리동	관리동	138.8	0.0	138.8	0.1%	50.27	0	50.27	50.27	0	50.27	1	1	
기타시설	소 계				16,534.50	0.0	16,534.50	10.0%	1,688.19	0.00	1,688.19	2,863.10	0.00	2,863.10	-	-	
	7-1	7-1	웰빙식품센터	웰빙식품센터	11,558.70	0.0	11,558.70	7.0%	1,688.19	0.00	1,688.19	2,863.10	0.00	2,863.10	2	2	
	7-2	7-2	계 류	계 류	2,933.10	0.0	2,933.10	1.8%	0	0.00	0	0	0.00	0	-	-	
	7-3	7-3	벽 천	벽 천	382.7	0.0	382.7	0.2%	0	0.00	0	0	0.00	0	-	-	
	7-4	7-4	배수지	배수지	1,660.00	0.0	1,660.00	1.0%	0	0.00	0	0	0.00	0	-	-	
녹지	8-1	8-1	녹 지	녹 지	48,335.10	-1,079.5	47,255.60	28.6%	0	0.00	0	0	0.00	0	-	-	

다.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유원지	◦ 세부시설 및 부지면적 변경 -유희시설 : 반려동물놀이터 신설 -휴양시설 : 야유회장 폐지 -특수시설 : 변경없음 -편익시설 : 펫카페 신설 -관리시설 : 도로 변경 -녹지시설 : 녹지 변경 ◦ 건축물 변경 - 펫카페 신설 -건축면적 : 50.0㎡ -건축연면적 : 50.0㎡ -지상1층	◦ 금회 반려동물놀이터 신설(야유회장 폐지 등)을 통하여 유원지 전반에 대한 이용률 제고 및 유원지 활성화 도모

라.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지구내도로 조서 : “실음생략”

3.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고창군 공고 제2024-2033호

고창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고창군 고시 제2023-1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759-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군계획시설(유원지)
 - 사업명 : 복분자특화농공단지 기반시설(배수지 등)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배수지조성 A=81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26. 12. 31.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 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필지		29,580.7	**815.4**						
1	부안면 용산리	759-13	원	29,371.6	773.3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	44-3	원	209.1	42.1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 공고 제2024-2034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열람·공고

고창군 고시 제2024-7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 및 세계유산과(063-560-28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산10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사업명 : 운곡습지 생태길(1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0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창군수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6 1. 31.
6. 열람(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5일간(공휴일 포함)
 - 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및 세계유산과(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0.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세계유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 조서(소로3-916호선)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번지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9필지			5,097						
1	아산면 운곡리	454	구	23,769	3	국 (국토교통부)					
2	〃	395	유	3,276	7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3	〃	367-1	유	27,676	24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4	〃	463	도	2,678	150	국 (국토교통부)					
5	〃	393	유	2,678	29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6	〃	산103-1	임	479,037	3,314	김*택	전라남도 순천시 유동길 ***				지분 1/3
						김*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				지분 1/3
						김*홍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				지분 1/3
7	〃	산103-4	유	17,360	8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8	〃	86-1	유	998	111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9	〃	86-2	유	3,403	4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고창군 공고 제2024-2038호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4-1742호로 공람·공고한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고창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고창군 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2024년 12월 6일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04번지 일원
다. 면 적 : 지구단위계획 66,100㎡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7	-	심원면 만돌리 960-104번지 일원	66,100	-	66,100	고창군고시 제2024-124호 (2024.09.13.)	관광휴양형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해당사항 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해당사항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 적(㎡)	비율	
-	A	관광휴양시설용지	66,100	-	만돌리 960-104번지 일원	66,100	100	리조트, 호텔, 컨벤션 등 내부도로(폭 8m 이상 확보), 주차장, 녹지(30% 이상 확보), 진출입부(직선형 도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안)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아목, 자목, 파목, 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관광숙박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80m 이내
		배치		◦ 주변 평탄지임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시 경관 확보 및 외부공간 연계성 확보
		형태 및 색채/재질		◦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사용 ◦ 건축 벽면, 담장, 시설물 등 인공적인 벽화(채색) 및 고채도, 광택재질 지양 ◦ 고창군 특징을 활용해 전통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3. 주민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4. 관련도서 : “실음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 063-560-2566) 및 신활력경제 정책관(☎ 063-560-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